

2012 경기도 공연장상주단체 워크숍 결과자료집

예술협동조합 집담회
예술협동조합 제8의 원칙



집단적인 회식과 오락

2013. 02. 27(수)

청석에듀씨어터

주최/

국립한글박물관

주관/

국립한글박물관



예술협동조합 집담회
예술협동조합 제8의 원칙



집단적인 회식과 오락

2013. 02. 27(수)

청석에듀씨어터



예술협동조합 집담회
예술협동조합 제8의 원칙



집단적인 호식과 오락

1. 기조발제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와 그 정신'으로

07

2. 집담회 녹취록

15

3. 복임자료

협동조합 설립 실무(설립절차와 표준 정관 예시)

39

예술협동조합 집담회

주제 : 예술협동조합 제8의 원칙, 『집단적인 회식과 오락』

사회 이기복(파발극회 대표)

좌장 장승권(성공회대 경영대학원 협동조합학과 교수)

시간	내용	발제자
13:30~14:00	친교 및 인사 말씀	
14:00~15:00 (60')	기조발제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와 그 정신’으로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15:00~15:10 (10')	휴식	
15:10~16:10 (60')	생산자협동조합의 협력 가능성 - 느슨한 네트워크 ‘행복충전소’ 설립	김병호(좋은사람들 대표) 송인현(극단민들레 대표) 원영오(극단노뜰 대표) 오정석(예술무대산 기획실장)
16:10~16:20 (10')	휴식	
16:20~17:20 (60')	마을 안에서 가능한 예술협동조합의 상 - 호혜적 예술활동을 통한 생산관계의 전환	이광준(바람부는 연구소 대표) 송주희(이웃협동조합 대표) 이희경(문탁 공동대표)
17:20~18:00 (40')	자유토론	



기조발제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와 그 정신’으로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와 그 정신’으로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왜 굳이 협동조합일까?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있고, 각자 자신의 목표에 맞는 다양한 형태들을 선택해 활동한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어떤 형태를 선택하다보니 그 형태에 맞는 꿈을 꾸게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협동조합은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일까? 협동조합이라는 틀은 어떤 꿈을 꾸기에 적합할까? 나는 왜 어떤 꿈을 꾸려고 하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꿨을까?

이 자리에는 예술협동조합이라는 형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질문들을 서로 나누면 좋겠다. 답을 나누면 동업자를 얻겠지만, 질문을 나누다보면 길동무를 만날 수 있으니 서로 많은 질문을 나누면 좋겠다.

말하는 사람부터 소개하자면 나는 정치학을 공부했고 아나키즘과 풀뿌리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03년부터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2012년부터 대학에서 강의하는 걸 관뒀다. 관둔 이유는 내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것 공부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욕하고 싶은 거 맘껏 욕하고 싶은 마음에 사표를 냈다. 만 3살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독서모임과 공부모임 등을 열고 있다. 2013년에는 1978년에 부산, 서울, 수원, 광주 등지에서 만들어졌던 양서협동조합(良書協同組合)을 부활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1. 왜 협동조합인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건 상호부조와 협동의 역사를 찾을 수 있다. 근대국가와 자본주의가 등장했던 시기 이전에는 곳곳에서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먼 과거의 낭만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현실이다. 얼마 전 SBS에서 방영된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세계최강대국 미국과 급부상하는 초강대국 중국,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의 작은 섬 아누타가 등장한다. 부모와 아이들이 차 한 대에 몸을 싣고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일자리를 찾아 수천 마일을 떠돌아야 하는 자본주의 국가 미국,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도시로 왔지만 냉혹한 생존만이 반겨주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 서로 나누고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고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아로파’라는 말을 가진 작은 부족.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자 하는가?

협동이라고 하면 매우 이타적인 도덕성을 떠올릴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다. 협동조합은 자립(自立)을 위한 협동조직이다. 자립이란 스스로 일어선다는 뜻이다. 쿨하게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뜻일까? 허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돈 많은 부자들도 훌로 서는 건 아니고 타자를 이용하고 착취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생각하기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립이란 거짓일 수 있다. 세상에 훌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자립을 위한 협동조직이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필요를 조직할 뿐 아니라 그 필요를 해석하고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들의 삶을 지지한다. 다른 외부의 자원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힘으로 그런 토대를 만든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타자를 만나는 공간이자 자신을 만나는 공간이다. 나를 알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자의 존재를 알고 인정할 수 없듯이, 내가 그런 나를 알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만남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과 타자를 깨달아간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자를 인정할 수 없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타자를 존중할 수 없고, 나와 약속할 수 없는 사람은 타자와 약속할 수 없다. 내가 남에게 기댈 수 있어야 남도 나에게 기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타자도 일어설 수 있다. 결국 자립이란 타자와 더불어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한 나의 조건이고, 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실천하는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꿈꾸는 완성된 형태란 존재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 꿈이다.

2.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에도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수는 결코 적지 않다. 농협의 조합원수가 2백 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수협도 16만 명, 신용협동조합도 5백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이런 수를 바탕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농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아이쿱생협 등이 가입되어 있다). 현재 연합회가 구성된 국내 소비자생협의 조합원 수와 공급액도 아래 표처럼 결코 적지 않다.¹⁾

구분	지역조합수	조합원수			공급액		
		2010	2011	증가율	2010	2011	증가율
한살림	30	247,072	293,442	18.8	186,686	222,581	19.2
아이쿱생협	75	118,824	155,705	31.0	219,647	290,132	32.1
두레생협	23	85,022	103,874	22.2	66,674	75,072	12.6
민우회생협	5	22,792	26,763	16.4	16,962	17,015	0.3
합계	123	473,890	579,757	22.3	489,996	604,800	23.4

이 자료를 보면 소비자생협연합회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2011년을 기준으로 약 58만명이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물품거래비용도 6,000억 원을 넘는다. 더 놀라운 건 불황과 경기침체 속에서도 조합원 수의 평균증가율이 22.3%이고, 공급액 증가율도 23.4%에 달한다는 점이다. 증가율을 고려하면 이 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그 규모만이 아니라 역사도 결코 짧지 않다. 김형미 등이 엮은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기원과 전개』(푸른나무 2012년)나 김기섭의 『깨어나라 협동조합』(들녘, 2012년) 등을 보면

1) 신중일, “생협 필요성 커지는데 불교계는 제자리”, 『현대불교』2012년 9월 15일자.

한국협동조합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 1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이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으로 자립을 꿈꾼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된다는 얘기이다. 그 형태도 다양했다. 소비조합, 신용조합, 공생조합, 농촌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져 민중의 삶을 지지했다.

전라남도 완도군에는 소안도라는 작은 섬이 있다. 작은 섬이지만 소안도는 일제 강점기에 경찰과 말도 섞지 말자는 불언 동맹不言同盟을 조직했고, 1928년에는 4000여 명의 주민 가운데 800명이 공산주의자 혐의를 받으며 심한 탄압을 받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섬 주민들이 감옥에 갇힌 시간을 모두 합치면 300년이 넘을 정도로 저항의 기운이 드높았던 곳이다. 주민들은 “슬프도다 /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 /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악행 당할 때 /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하나 / 장래 일을 생각하니 즐거웁도다”라는 〈옥중가〉를 부르며 한겨울에도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잤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은 일본과 만주 등지의 항일 조직과 사람과 물자를 주고받으며 수많은 활동가를 배출한 ‘해방의 땅’이기도 했다. 지금도 작은 섬에 항일운동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주민의 자부심은 높다.

농민만이 아니라 어민도 섬 지역의 특성상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바다에 경계선을 긋고 각자의 소유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즉 공유가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어장은 공동체의 토의와 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어촌에서는 마을 총회와 어촌계 총회를 통해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이 결정되고 있다. 소안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양식으로 유명한데, ‘단’이라는 특유의 공동 어장을 운영했다. 자연산 톳이나 미역 등을 채취하고 공동 분배하는 조직인 단은 한 마을 내에 같은 수의 가구로 구성되었다. 이런 공동성은 함께 일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소안도 토지계쟁사건 소송을 이끌었던 4명의 면민面民 대표들은 자신들의 송덕비 대신 학교를 세우자고 제안했고 주민들은 이에 찬성했다. 1913년에 설립되어 항일 사상의 씨를 심던 중화 학교를 발전시킨 소안 사립학교에는 저항적인 지식인들이 모여들었고, 완도 근처 섬들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당시 일본 노래와 일본어를 가르치며 식민지 교육을 실시하던 공립학교의 학생 수는 30명에 그쳤지만, 소안 사립학교에는 한때 15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학교에서 미신 타파, 조혼 폐지, 언어 평등, 남녀 평등 등을 배운 학생들은 공동체의 지도자로 거듭났다.

소안도가 일찍부터 사회주의의 세례를 받은 것은 지리적인 탓도 컸다. 일본의 오사카와 제주도를 잇는 뱃길이 개발되면서 많은 전라남도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자로 일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자연스레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식인들도 새로운 사회의 사상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다.

소안도에서는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는 각종 강습회, 토론회 등이 열렸고 소안도는 사회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소안 사립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부르던 〈소년단가〉는 그 정신을 이렇게 표현했다. “노동과 학문으로 직업을 삼고/ 정의와 사랑으로 정신을 삼아/ 같이 먹고 같이 살자/ 평화 세계는 우리들의 눈앞에 완연하구나” 어릴 적부터 이런 노래를 부르며 자랐고 공동체가 삶의 기반을 공유했기에 당시 소안도에서는 20살만 되어도, 아니 10대에도 직접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의식을 가졌다.

소안학교만이 아니었다. 1920년 4월에는 마을주민들로 배달청년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배달청년회는 마을 차치 단위였던 리리를 중심으로 노동 단체를 조직하는 데 힘쳤다. 그리고 1924년에는 소안 노동대성회(所安勞動大成會)가 결성되어 공동 경작계와 공동 어장계를 만들어 공동 노동에 힘쳤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다는 게 모임이 공동체의 기반이 되었다. 이 모임은 함께 노동하는 것 외에도 독서회와 강연회를 열어 농민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켰다. 이처럼 소안도에서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념이 서로 부딪치고 어울리며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갔다.

그런 점에서 소안도는 전통적인 마을 단위의 조직 형태를 근대적인 사상과 결합하는 실험장이었다. 계급 노선과 공동체 노선이 서로 어울렸고 그 속에서 강력한 연대의 힘이 만들어졌다. 완도 주변에서 1925년 창립된 필연단과 1928년 창립된 살자회는 “우리는 역사적 필연성인 진화 법칙에 의하여 합리적 신사회의 건설을 기하자. 우리는 상호부조와 일치단결로써 민중 운동의 충실한 역군이 되자.” “우리는 상호부조와 정의에 희생할 정신 함양을 도모함. 우리는 신사회 건설의 속성을 도모함.”이라는 강령을 결의했다. 아나키즘의 주요 노선인 상호부조가 사회주의 청년 단체들의 주요한 강령이 된 것은 이런 어울림과 연대를 반영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할까?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가리킨 바 없다. 그리고 농협이나 신협, 수협을 제외하면 우리 일상에서 협동조합을 잘 목격하지도 못한다. 한편으로 그런 협동조합들은 국가의 탄압을 받으며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제도화된 기관으로 편입되었다. 협동조합이라는 틀은 계속 살아남았지만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던 꿈은 사라졌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는 자립과 협동을 계속 방해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을 불이고 이긴 자에게 모든 걸 몰아주는 사회이다. 1박 2일처럼 무조건 복불복이다. 타인이 까나리액젓을 먹는 걸 보며 깔깔대고 내가 먹지 않음을 안심한다. PD가 아닌 이상 1박 2일의 멤버들이 벌칙을 영원히 피할 수 없듯이, 언젠가는 내 순서도 돌아온다. 이런 흐름이 변하지 않는 한 자립과 협동의 문화가 자연스레 꽂필 거라 기대하긴 어렵다.

이것은 현재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협동조합의 국제연대기구인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 정의한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 정의한다. 두 정의에서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나?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공동구매/생산/판매/제공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제한하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인가하는 기획재정부도 협동조합을 “함께 규칙을 만들고 착실하게 이용하는 정의로운 사업체”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칙과 정의는 케이크를 나누는 방식에 관한 것이지 어떤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왜 케이크를 먹어야 하는가를 다루지 않는다.²⁾

3. 협동조합의 정신

현실을 약간 비틀어서 저항하기는 쉽지만 삶의 규칙을 새로 짜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국가나 자본의 힘은 매우 강하고 우리 일상을 지배한다. 이런 체제는 사소한 일탈을 허용하지만 규칙을 새로 짜려는 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규칙을 새로 짜는 힘을 만드는 건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니 자립이 더불어 사는 삶을 전제하듯이 규칙을 짜는 건 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더 간절히 필요할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어떤 꿈을 꾸며 걸어가고 있는가? 먼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행복을 위해 삶을 재구성하고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처음 등장했던 일제 식민지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던 시기였다. 편하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절실해서 꿈을 꿨다. 그 꿈을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조금씩 맛만 보자.

일제 식민지 시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자치와 자급을 실현할 이상촌을 전국에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이상촌에는 금융기관과 더불어 생산품의 공동판매와 공동구매를 담당할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일할 사람들을 기르는 학교와 공회당(公會堂), 목욕탕, 운동장, 우편국 등이 자리잡을 계획이었다. 200호 정도의 부락단위에서 교육조직과 노동조직이 함께 운영되면서 안전하고 유쾌한 삶을 사는 마을, 이런 마을이 전국에 있다면 일제에게 독립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할 실력을 갖추게 된다. 이 구상을 실현할 첫 단수가 평양의 대성학교였다.

안창호 선생이 강조한 것은 단순했다. 무실역행(務實力行)과 정의돈수(情誼敦修), “아무리 옳은 것을 알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아니 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서로의 사랑을 도탑게 닦는 것, 사랑하기를 날마다 힘써 그것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했다.

그리고 이 대성학교의 이상을 이어받은 것이 원주에 세워진 무위당 장일순의 대성학원이다. 장일순은 전체와 분리되고 고립되어 존재하는 개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각자가 제각기 자신의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장일순은 끊임 없이 강조했다.

장일순의 사상은 세상을 전일적(全一的)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장일순은 해월 최시형의 사상을 이어받아 ‘이천식천(以天食天)의 사상’, 즉 “하늘이 하늘을 먹고 산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세상만물의 순환적인 상호의존 관계에서 성장과 개발이 판치는 현실을 넘어설 대안을 찾았다(<한살림>의 사상 모심과 살림은 이 장일순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심과 살림의 세계관은 공생의 관계를, 그런 공생을 통한 무위(無爲)의 변화를 전제한다. 예를 들어 학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나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선생이 되기도 하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가르치는 자의 역할은 산파이다.³⁾ 이익에 기반한 경쟁은 극단적인 대결로

2)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 2013년 1월 24일 발행.

3) “선생이라는 게 뭔가? 제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 큰 덕을 토워주는 것 아닌가? 토워주였으면 자기가 토워주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게 ‘무하적(無瑕謫)’이지. 옛날 소크라테스가 그랬다고 하지 않는가? 나는 상대방이 이미 지나고 있는 것을 낭게 해준 산파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가 최소한 이쯤은

치닫고 결국에는 생명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신이 우주 속의 한 부분임을 망각하고 부분적인 이익만을 쫓을 경우 균형을 잃어버린 전체는 기울어지며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스스로 깨우치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다.

특히 장일순은 이미 경쟁과 파괴로 기울어진 세상에서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길은 내 위치를 지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봤다. 그런 점에서 장일순은 끊임없이 활동가들에게 서두르지 말고 밑으로 기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자애, 겸약, 겸손의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의 중요성을 증명했다. 장일순의 무위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공생공존하는 바탕에서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뜻하고 그런 점에서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위무위(爲無爲)’를 뜻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인 도와 생명으로 돌아가려는 치열하게 노력할 때 자연스러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장일순은 이렇게 밑으로, 바닥으로 길 때 위로 상승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세상의 어둠이 빛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썩은 세상과 어두운 현실은 단지 썩음과 어두움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움과 빛을 품고 있다고 하겠다.

도산 안창호의 뜻을 따랐던 남강 이승훈 선생은 오산학교를 세웠다. 이승훈 선생은 용동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사유지 일부를 마을 전체의 공유 농지로 기증하는 한편 마을조직인 용동회를 조직했다. 용동회는 “자치적으로 마을의 위생, 교양, 풍기는 물론이고 마을의 모든 일을 처리”했고, 당시로서는 드물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가운데서도 한 명씩 간사를 선출하여 마을일을 함께 의논”했다. 용동회와 별도로 이승훈 선생의 측근과 친척들이 자면회를 조직해서 근면, 청결, 책임을 주장하며 “농지 개량, 연료 개량, 협동생산, 협동노동 및 소득증대”를 추구했다. 이런 토대를 다졌던 이승훈 선생은 “나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말을 남겼다.

그 학교에서 함석헌, 김교신, 이찬갑 등의 훌륭한 스승들이 교편을 잡고 공부를 했다. 이찬갑 선생은 충남 홍성에 풀무학교를 세웠고, 풀무학교는 <풀무신용협동조합>과 <풀무생협>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홍성신문>이라는 지역언론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전국 정농회 홍성지부>, <지역사회연구회>, <갓골어린이집>, <풀무학교생협>, <밝맑도서관>, <지역센터 마을활력소> 등을 만들어 마을거점들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 한국사상을 대표했던 함석헌 선생은 1968년에 부산에서 만들어진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의 첫 번째 조합원이었다. 함석헌 선생은 사람이 사회적 존재이고 “인격이란 것은 있기는 개(個)로 있으나 그 바탕(性)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개체가 아니고 전체요, 마찬가지로 “한 시대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은 결코 개인행동의 타락이나 어떤 제도의 깨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사회가 어지러워진 결과로 오는 것이다. 어지러움은 그보다도 전체의 산 통일이 깨지는 데서 온다.” 따라서 고난을 겪으며 회복된 자의식은 개인적 가치를 내세우지 않고 전체의 통일을, ‘하나’의 회복을 추구한다.

돼야 하지 않겠어? ‘나는 산파여.’”

그렇게 자의식을 회복한 민중은 스스로 깨어날 힘을 가지게 된다. 아니, 이미 민중은 스스로 깨어날 힘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 함석헌은 이를 ‘꿈틀거림’이라는 개념으로 축약된다. 민중의 꿈틀거림이야말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생성할 것이다. “그 꿈틀이 무서운 꿈틀이다. 그것은 사나운 겨울바다, 같은 권세 밑에 갇히는 민중의 꿈이다. 그러나 그 꿈이 터지고야 마는 봄이 온다. 삶은 절대이기 때문에 터지고야 만다. 말도 못하고 죽는 민중의 꿈틀거림은 생(生)의 항의(抗議)다. 삶의 외침이다. 삶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이다. 역사의 길이다. 내가 이름 없는 민중이라도 민중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나는 협동조합을 꿈꾸던 사람들이 이런 삶과 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협동조합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것이 차지하는 뜻이 커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협동의 그 물망으로 엮이지는 않을 것 같다. 함께 살려면 일단 먼저 서로를 마주봐야 한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야 한다. 그렇게 마주보고 상상하다보면 먼 미래의 좋은 삶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협동조합운동은 그런 삶을 위한 틀이 될 때 온전히 제 뜻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을 하려는 분들의 꿈이 한국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고, 먼 미래에 훌륭한 조합을 만들겠다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지금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에 바탕을 두면 좋겠다.



집담회

녹취록



들어가며

이기복: 이곳 경기도 광주까지 먼 길을 마다않고 집담회에 참석하여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집담회의 진행은 장승권 교수님께서 맡아주실 것이고 저는 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뒤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 양원모 팀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양원모: 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문예진흥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협동조합, 예술협동조합에 대한 꿈과 예술인들이 함께 지역민과 더불어 어울려 살 수 있는 아담한 예술마을에 대한 꿈을 꿨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성에서 한 4년 살 때, 1994년 농민분들, 의사분들, 그리고 예술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의료생활협동조합은 법외였습니다. 그래서 법적 보장을 받지 못했지만 작년 12월에 여러가지 별별 다양한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실험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복: 이제 마이크를 좌장이신 장승권 교수님께 넘겨 본격적인 집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승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공회 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 경영학과에서 교수로 있는 장승권입니다. 사실 저는 예술 쪽에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고 협동조합 경영에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면서 사업체로서의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집담회 자료를 보니까 제가 아는 참고문헌이나 아이디어들 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집담회가 저에게는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도 같다는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오기 전에 학생들과 워크샵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학생과 교수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일하는 일종의 지식 협동조합을 만들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오늘 이 집담회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고 새로운 행동을 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프로그램은 크게 두 분의 발제와 다섯분의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번째 기조발제자이신 하승우선생님이 '협동조합의 역사와 그 정신으로'라는 주제로 한 시간 정도 말씀해주시겠습니다.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와 그 정신으로 (기조발제)

하승우: 저는 2001년도부터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음은 주로 지역의 마을공동체나 주민운동 풀뿌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저는 학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부했고, 지역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자치와 자급이 가능할 것인가 제 공부의 주제였습니다. 그런쪽으로 공부를 하다보니까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이 유엔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다 보니 협동조합에 대한 외국의 다양한 사연들이 참 많이 소개 되었습니다.



하승우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협동조합에서 '협동'이라는 문화가 이야기 해주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 보다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한국내에서 협동조합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료집에 있듯이 원래는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강의는 안하구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밖에서 하고 싶기 때문에 하고 있고, 올해의 목표 중에 하다가 협동조합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1978년 양서협동조합이 한국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활동을 하다가 한국사회 상황 때문에 협동조합이 강제 해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요. 양서협동조합을 다시 부활시켜볼까? 이런 꿈을 꾸고 있으면서 올해 6월 양서협동조합을 부활시키는 본격적인 첫 출발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이야기 할 때 양원모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협동조합이 없었던게 아니라 사실은 한국에 여러 종류의 협동조합 실험이 있었는데 그런 다양한 실험들이 사회적 의미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가 작년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틀은 근대적인 양식이긴 하지만 협동하는 문화는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했고, 얼마전 SBS에서 방영된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우리가 가장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에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미국 동부에서 서부를 왔다 갔다 해야만 하는, 자동차에서 아이 둘과 부모들이 다같이 살아야만 하는 게 가장 발전된 국가의 모습인 반면, 굉장히 낙후되고 별로 행복할 것 같지도 않은 솔로몬 제도에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매우 행복해 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의 주요한 발전은 주로 양적인 부분에 많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런 양적인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반증인 셈이죠.

협동조합에서 '협동'이라는 문화가 이야기 해주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 보다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을 고민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보통 '협동'을 남에게 뭘 주고 받고 하는 관계로 많이 생각하지만, 저는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협동이라는 것이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각자가 "어떻게 스스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관점이 "협동조합은 자립을 위한 관점이다", "자립을 위한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자립'을 '혼자 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도 홀로 서는 건 아니고 타자를 이용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생각하기 위해 타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립이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협동조합은 자립을 위한 협동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필요를 조직할 뿐 아니라 그 필요를 해석하고 다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들의 삶을 지지합니다. 다른 외부의 자원을 동원해서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힘으로 그런 토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타자를 만나는 공간이자 자신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나를 알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자의 존재를 알고 인정할 수 없듯이, 내가 그런 나를 알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만남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는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과 타자를 깨달아갑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타자를 인정할 수 없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타자를 존중할 수 없고, 나와 약속할 수 없는 사람은 타자와 약속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기댈 수 있어야 남도 나에게 기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타자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 자립이란 타자와 더불어 좋은 삶을 누리기 위한 나의 조건이고, 협동조합은 그 목적을 실천하는 조직입니다. 협동조합이 꿈꾸는 완성된 형태란 존재하지 않고 협동조합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그 꿈입니다.

한국 협동조합의 역사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음에도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의 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농협의 조합원수가 2백만명을 훌쩍 넘어섰고, 수협도 16만명, 신용협동조합도 5백만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소비자생협연합회에 소속된 조합원 수는 2011년을 기준으로 약 58만명이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물품거래비율도 6,000억 원을 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불황과 경기침체 속에서도 조합원 수의 평균증가율이 22.3%이고, 공급액 증가율도 23.4%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증가율을 고려하면 이 수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한국협동조합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 1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직이 협동조합인 셈이죠. 협동조합으로 자립을 꿈꾼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태도 다양했는데 소비조합, 신용조합, 공생조합, 농촌협동조합 등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져 민중의 삶을 지지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에는 소안도라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작은 섬이지만 소안도는 일제 강점기에 경찰과 말도 섞지 말자는 불언 동맹을 조직했고, 1928년에는 4000여 명의 주민 가운데 800명이 공산주의자 혐의를 받으며 심한 탄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섬 주민들이 감옥에 갇힌 시간을 모두 합치면 300년이 넘을 정도로 저항의 기운이 드높았던 곳입니다. 주민들은 “슬프도다.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 이런 고생 저런 고생 악행 당할 때 두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하나 장래 일을 생각하니 즐거움도다”라는 옥중가를 부르며 한겨울에도 이불을 덮지 않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일본과 만주 등지의 항일 조직과 사람과 물자를 주고 받으며 수많은 활동가를 배출한 ‘해방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작은 섬에 항일운동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주민의 자부심은 높습니다. 농민만이 아니라 어민도 섬 지역의 특성상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바다에 경계선을 긋고 각자의 소유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즉 공유가 기본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어장은 공동체의 토의와 회의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촌에서는 마을 총회와 어촌계 총회를 통해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소안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양식으로 유명한데, ‘단’이라는 특유의 공동 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산 톳이나 미역 등을 채취하고 공동 분배하는 조직인 ‘단’은 한 마을 내에 같은 수의 가구로 구성됩니다. 이런 공동성은 함께 일하고 공평하게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소안도 토지계쟁사건 소송을 이끌었던 4명

의 면민 대표들은 자신들의 송덕비 대신 학교를 세우자고 제안했고, 주민들은 이에 찬성했습니다. 1913년에 설립되어 항일 사상의 씨를 심던 중화 학교를 발전시킨 소안 사립학교에는 저항적인 지식인들이 모여들었고, 완도 근처 섬들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도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일본 노래와 일본어를 가르치며 식민지 교육을 실시하던 공립학교의 학생 수는 30명에 그쳤지만, 소안 사립학교에는 한때 15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미신 타파, 조흔 폐지, 언어 평등, 남녀 평등 등을 배운 학생들은 공동체의 지도자로 거듭났습니다. 소안도가 일찍부터 사회주의의 세례를 받은 것은 지리적인 탓도 컸습니다. 일본의 오사카와 제주도를 잇는 뱃길이 개발되면서 많은 전라남도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자연스레 노동조합과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식인들도 새로운 사회의 사상으로 사회주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안도에서는 새로운 사상을 소개하는 각종 강습회, 토론회 등이 열렸고 소안도는 사회 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소안 사립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이 부르던 '소년단가'는 그 정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동과 학문으로 직업을 삼고, 정의와 사랑으로 정신을 삼아, 같이 먹고 같이 살자. 평화 세계는 우리들의 눈앞에 완연하구나" 어릴 적부터 이런 노래를 부르며 자랐고 공동체가 삶의 기반을 공유했기에 당시 소안도에서는 스무살 만되어도, 아니 십대에도 직접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의식을 가졌습니다.

소안학교 뿐 아니라 1920년 4월에는 마을주민들로 배달청년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배달청년회는 마을 자체 단위였던 리를 중심으로 노동 단체를 조직하는 데 힘쳤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는 소안 노동대성회가 결성되어 공동 경작계와 공동 어장계를 만들어 공동 노동에 힘쳤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다는 게 모임이 공동체

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함께 노동하는 것 외에도 독서회와 강연회를 열어 농민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켰습니다. 이처럼 소안도에서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념이 서로 부딪치고 어울리며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안도는 전통적인 마을 단위의 조직 형태를 근대적인 사상과 결합하는 실험장이었습니다. 계급 노선과 공동체 노선이 서로 어울렸고 그 속에서 강력한 연대의 힘이 만들어졌습니다. 완도 주변에서 1925년 창립된 필연단과 1928년 창립된 살자회는 "우리는 역사적 필연성인 진화 법칙에 의하여 합리적 신사회의 건설을 기하자. 우리는 상호부조와 일치단결로써 민중 운동의 충실한 역군이 되자.", '우리는 상호부조와 정의에 희생할 정신 함양을 도모함. 우리는 신사회 건설의 속성을 도모함.'이라는 강령을 결의했습니다. 아나키즘의 주요 노선인 상호부조가 사회주의 청년 단체들의 주요한 강령이 된 것은 이런 어울림과 연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할까요?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협이나 신협, 수협을 제외하면 우리 일상에서 협동조합을 잘 목격하지도 못합니다. 한편으로 그런 협동조합들은 국가의 탄압을 받으며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제도화된 기관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틀은 계속 살아남았지만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던 꿈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는 자립과 협동을 계속 방해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끊임없이 경쟁을 불이고 이긴자에게 모든 걸 몰아주는 사회입니다.

1박 2일처럼 무조건 복불복입니다. 타인이 까나리액젓을 먹는 걸 보며 깔깔대고 내가 먹지 않음을 안심합니다. PD가 아닌 이상 1박 2일의 멤버들이 벌칙을 영원히 피할 수 없듯이, 언젠가는 내 순서도 돌아옵니다. 이런 흐름이 변하지 않는 한 자립과 협동의 문화가 자연스레 꽂필 거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것은 현재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드러납니다. 협동조합의 국제연대기구인 국제 협동조합연맹(ICA)은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 정의합니다. 그런데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정의에서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한국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공동구매, 생산, 판매, 제공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제한하려는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인가하는 기획재정부도 협동조합을 '함께 규칙을 만들고 착실하게 이용하는 정의로운 사업체'로 정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칙과 정의는 케이크를 나누는 방식에 관한 것이지 어떤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왜 케이크를 먹어야 하는가를 다루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정신

현실을 약간 비틀어서 저항하기는 쉽지만 삶의 규칙을 새로 짜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국가나 자본의 힘은 매우 강하고 우리 일상을 지배합니다. 이런 체제는 사소한 일탈을 허용하지만 규칙을 새로 짜려는 건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새로 짜는 힘을 만드는 건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더 간절히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어떤 꿈을 꾸며 걸어가고 있는가? 먼 미래의 행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행복을 위해 삶을 재구성하고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이 처음 등장했던 일제 식민지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던 시기였습니다. 편하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절실해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길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조금 맛을 보면 일제 식민지 시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자치와 자급을 실현할 이상촌을 전국에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이상촌에는 금융기관과 더불어 생산품의 공동판매와 공동구매를 담당할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일할 사람들을 기르는 학교와 공회당, 목욕탕, 운동장, 우편국 등이 자리잡을 계획이었습니다. 200호 정도의 부락단위에서 교육조직과 노동조직이 함께 운영되면서 안전하고 유쾌한 삶을 사는 마을, 이런 마을이 전국에 있다면 일제에게 독립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독립할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구상을 실현할 첫 단추가 평양의 대성학교였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강조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무실역행(務實力行)과 정의돈수(情誼敦修) 즉, 아무리 옳은 것을 알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아니 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서로의 사랑을 도탑게 닦는 것, 사랑하기를 날마다 힘써 그것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성학교의 이상을 이어받은 것이 원주에 세워진 무위당 장일순의 대성학원입니다. 장일순은 전체와 분리되고 고립되어 존재하는 개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각자가 제각기 자신의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의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장일순은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장일순의 사상은 세상을 전일적(全一的)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장일순은 해월 최시형의 사상을 이어받아 '이천식천(以天食天)의 사상', 즉 "하늘이 하늘을 먹고 산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세상만물의 순환적인 상호의존 관계에서 성장과 개발이 판치는 현실을 넘어설 대안을 찾았습니다. 한살림의 사상인 모심과 살림은 이 장일순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심과 살림의 세계관은 공생의 관계를, 그런 공생을 통한 무위(無爲)의 변화를 전제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나뉘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학생이 되기도 하고 학생이 선생이 되기도 하는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고, 가르치는 자의 역할은 산파입니다. 이익에 기반한 경쟁은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고 결국에는 생명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자신이 우주 속의 한 부분임을 망각하고 부분적인 이익만을 쫓을 경우 균형을 잃어버린 전체는 기울어지며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스스로 깨우치는 과정이 바로 교육입니다. 특히 장일순은 이미 경쟁과 파괴로 기울어진 세상에서 전체의 균형을 바로잡는 길은 내 위치를 지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일순은 끊임없이 활동가들에게 서두르지 말고 밑으로 기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자애, 겸양, 겸손의 삶을 살면서 그런 삶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장일순의 무위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공생공존하는 바탕에서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뜻하고 그런 점에서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위무위(爲無爲)’를 뜻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본인 도와 생명으로 돌아가려는 치열하게 노력할 때 자연스러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장일순은 이렇게 밑으로, 바닥으로 길 때 위로 상승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세상의 어둠이 빛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썩은 세상과 어두운 현실은 단지 썩음과 어두움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움과 빛을 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뜻을 따랐던 남강 이승훈 선생은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용동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사유지 일부를 마을 전체의 공유 농지로 기증하는 한편, 마을조직인 용동회를 조직했습니다. 용동회는 “자치적으로 마을의 위생, 교양, 풍기는 물론이고 마을의 모든 일을 처리”했고, 당시로서는 드물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가운데서도 한 명씩 간사를 선출하여 마을일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용동회와 별도로 이승훈 선생의 측근과 친척들이 자면회를 조직해서 근면, 청결, 책임을 주장하며 “농지 개량, 연료 개량, 협동생산, 협동노동 및 소득증대”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토대를 다졌던 이승훈 선생은 “나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학교에서 함석현, 김교신, 이찬갑 등의 훌륭한 스승들이 교편을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찬갑 선생은 충남 홍성에 풀무학교를 세웠고, 풀무학교는 풀무신용협동조합과 풀무생협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홍성신문이라는 지역언론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정농회 홍성지부, 지역사회연구회, 갓골어린이집, 풀무학교생협, 밝맑도서관, 지역센터 마을活力소 등을 만들어 마을거점들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한국사상을 대표했던 함석현 선생은 1968년에 부산에서 만들어진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의 첫번째 조합원이었습니다. 함석현 선생은 사람이 사회적 존재이고 ‘인격이란 것은 있기는 개(個)로 있으나 그 바탕(性)은 사회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개체가 아니고 전체요, 마찬가지로 “한 시대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은 결코 개인행동의 타락이나 어떤 제도의 깨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사회가 어지러워진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어지러움은 그보다도 전체의 산통일이 깨지는 데서 옵니다.” 따라서 고난을 겪으며 회복된 자의식은 개인적 가치를 내세우지 않고 전체의 통일을, ‘하나’의 회복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자의식을 회복한 민중은 스스로 깨어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이미 민중은 스스로 깨어날 힘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석현은 이를 ‘꿈틀거림’이라는 개념으로 축약합니다. 민중의 꿈틀거림이야말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한 힘을 생성할 것입니다.

“그 꿈틀이 무서운 꿈틀입니다. 그것은 사나운 겨울바다, 같은 권세 밑에 갇히는 민중의 꿈입니다. 그러나 그 꿈이 터지고야 마는 봄이 옵니다. 삶은 절대이기 때문에 터지고야 맙니다. 말도 못하고 죽는 민중의 꿈틀거림은 생(生)의 항의(抗議)입니다. 삶의 외침입니다. 삶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역사의 길입니다. 내가 이름 없는 민중이라도 민중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협동조합을 꿈꾸던 사람들이 이런 삶과 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협동조합들의 수가 늘어나고 그것이 차지하는 뜻이 커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협동의 그물망으로 엮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려면 일단 먼저 서로를 마주봐야 합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상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주보고 상상하다보면 먼 미래의 좋은 삶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운동은 그런 삶을 위한 틀이 될 때 온전히 제 뜻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을 하려는 분들의 꿈이 한국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고, 먼 미래에 훌륭한 조합을 만들겠다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지금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에 바탕을 두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예술쪽은 잘 모르구요. 그나마 한 가닥 고리가 있는 건 주로 홍대에서 인디밴드 하는 친구들이 하는, 조합원 형태로 운영되는 밴드와 개인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얼마전에 제가 강의를 갔는데 저를 초대한 친구 한 명만 있더라구요. 그걸 보면서 “아~ 예술가들과 협동조합하기가 쉽지않구나” 싶었어요. 조합을 필요로 하는데 협동조합 강의를 들어가면서까지 조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날 친구와 만났다가 집에 왔는데 사실 예술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뭔가 같이 모여서 한다고 하는 게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낯설고 어려운 것들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해봤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주입되어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고립을 깨기 위해 하는 것이고 누가 나에게 협동조합을 선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협동조합은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오히려 드러냈을 때 충돌과 잡음들이 조합이라는 틀 속에서 처음에는 불협화음이지만 그게 가닥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각자가 자기 속에 있는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새로운 눈을 뜨는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협동조합을 어렵긴 하지만 해보는 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는 어렵다 이야기하고 또 갑자기 마무리 할 때는 이런 이야기 해서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양면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이유는 장점을 강화시켜서 단점을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협동조합에 관한 것들을 논의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장승권: 하선생님 말씀은 협동조합이 쉬운 일이 아닌데 가치가 있는 일이니 한 번 해보자,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얼마전에 협동조합에 관한 강의를 했는데 비슷한 톤으로 이야기했더니 앞에서 질문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도대체 협동조합을 하라는 것이냐? 하지 말라는 것이냐?(웃음)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정부지원 어떻게 됩니까?(웃음) 그 얘기 꼭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거든요. “그거 지원받으면 안되지요. 그런거 없어요”

여러 가지 지적 하신 것들 중에 저도 오늘 많이 배웠는데 그중에 우리 교육에 대한 역사 이야기는 우리가 더 많이 생각을 해봐야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하는게 조금 더 의미있는 교육일까?” 협동에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더 많이 배우고 실천해야겠다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선생님께서 협동조합의 역사를 잘 설명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생산자협동조합의 협력 가능성, 느슨한 네트워크 ‘행복 충전소 설립’에 대한 김병호 선생님의 기조발제를 듣겠습니다.

김병호: 반갑습니다. 연극을 하면서도 기획, 제작, 축제운영 내지 예술감독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협회나 연합체의 예술정책 생산에 관여하면서 현장의 경험치가 시스템 내지는 제도를 정착하는데 나름 역할을 해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이 민간 예술단체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이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애초에 연극을 직업으로 선택했던 순간부터 했습니다. 저는 일찍 제 고집으로 연극을 하겠다고 부모로부터 외면 당하면서 객지 생활을 했던 입장이라 스스로 해내야 했고, 또 자립으로 단체를 운영해야 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출발은 가능하다고 보고 시작했습니다. 예술가들이 대체로 시작은 본인 의지로 하지만 어느 순간 다 남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애초에 기획자임을 선언하고 극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적인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제가 ‘느슨한 네트워크’란 말을 썼습니다만 협동조합을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극단에 처음 입문 했을 당시, 모든 단체들이 대체로 동인제 시스템이었습니다. 극단 민중에 입단해서 연극활동을 시작했을 당시, 극단 민중은 20년 정도된 정통 있는 단체였는데 국내에서 네다섯번째 가는 대표 성있는 단체였어요. 그리고 약 40명이 20대 초



김병호
좋은 사람들 대표

상호관계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에 익숙치 않은 우리사회에서 특히 개성이 강한 창작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과연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구성이 가능할까 느슨한 조합의 형태로 출발해서 창작집단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아주 층층이 한 연령대도 없는 곳이 없이 아주 왕성히 활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강했었어요. 근데 정작 그런 단체에 행정하는 사람은 총무한 사람이었어요. 놀랬습니다. 심지어 총무하는 사람도 연기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였는데, 반면 상당히 민주적이었어요. 규정이 따로 없었는데 전통적으로 관례로 내려왔던 시스템이 매우 인상적이고 민주적이고 그랬는데, 3년차 정도 지나며 반복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행정력이 뒷받침이 못했다는 거였어요. 회의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서 누적되고, 누적된 것이 다음 실행을 위해서 백업이 되고 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거고 책임은 없고, 자기들이 동의 했던 상황인데 결과를 두고는 “대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하는 식의 무책임한 행동이 빈번하기도 했습니다. 의견에 대충 따라가는 식으로 동의해놓고는 결과가 잘못되면 그냥 남 탓하고, 좋으면 다같이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왕성했던 활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생력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를 체계적으로 서포트 할 수 있는 전문회사를 설립한 것이 다운이라는 기획사였습니다. 89년부터 2001년 까지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사를 하면서 예술단체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고 거의 매일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어린이연극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을 때였는데 극단 사다리가 어린이 전문 극단이란걸 표방하면서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감지되던 때였어요. 아시테지 이사장님께서 젊은 사람들한테 해외에서 하는 총회에 함께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어린이극을 한두편 공연하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삼년 동안 한 달에 오만원씩 적금을 들어 한 열두명 정도가 총회가 열리는 노르웨이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 가서 여러가지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어린이극을 하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버라이어티하게 돌아가며 하지 않고 두세명이 출연해서, 철학적이었고 굉장히 깊이와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들을 공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극을 하는 총회인데 실제로 어린이 관객은 없고 전 세계에서 어린이극을 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거였어요. 당시 저희들은 경비를 줄이려고 방갈로를 얻어서, 다섯명이 묶을 수 있는 방갈로에서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고 다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문화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 원래 하고 있던 사업을 접고 기획사가 부설로 가지고 있던 극단 즐거운 사람들 만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연극에 전념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예술단체가 자생력을 갖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숙제를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린이극에 전념하면서 연극을 통한 행복지수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상당히 행복하고 진취적이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랄까? 어쨌든 재밌고 그런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전문예술단체나 사회적 기업이라는게 화두가 되었지만 제가 아시테지 이사장하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고민을 해보아도 그것들이 예술단체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나마 협회는 사회적 기업을 잘 만하면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지만, 일반 창작단체에 사회적 기업은 조금 안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과연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법인 형태로 가야 하나? 아니면 유한회사로 가야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빚을 안지고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단 운영의 한 방편으로 협동조합을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료들 중에서 더 관심이 갔던 게 세계적으로 가장 협동조합이 왕성하게 정착된 곳이 이태리의 볼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조사를 하면서 볼로냐의 어린이극장을 운영하는 극단을 알게 되었죠. 그 극단은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스몰사이즈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극단과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극단이 협동조합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문화관광연구원에서 문화예술협동조합의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업할 수 있겠냐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극단 교육 담당 단원과 마침 이태리에서 십여년 유학하고 온 친구와 함께 같이 이태리로 갔죠. 가서 보니까 협동조합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사회적 환경이 나 역사적 배경이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볼로냐에 협동조합이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건 상당한 역사적, 사회적 과정이나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의식수준이 지금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발제 제목으로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하면 저희 극단과 다른 공연단체들이 친하게 가깝게 지내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거들기도 하면서 함께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모임의 명칭을 지었던 게 가족문화공동체라는 거였어요. 포스터에 넣으려면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모였던 11개 단체가 지금도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도 하고 다른데서 공연을 필요로 하면 소개도 하고 가기도 하고 이런 관계로 쭉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태리에 갔다 와서 극단, 그러니까 창작단체가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공공재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리 사회전반의 수동적인 시스템 속에서 양산된 페이퍼 단체들이 대다수 인데, 자생적으로 자립심을 가지고 한다라는게 가능할 것인가? 당장은 쉽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극단 즐거운 사람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모두를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문화 공동체라는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에 극단이나 공연단체의 대표들이 조합원으로 참가하면 단체마다 공연 컨텐츠를 이미 가지고 있고 레파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결성하여 즉시 수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 가는 형태로 생각을 하였고 모임에서 단체별 역할과 공동의 의제를 토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죠. 예술무대 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단계이고, 민들레 같은 경우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금 법인으로 전환을 준비를 하며 운영을 하는 등 여러가지 자립형태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도 연차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형태로든지 틀이 잡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임의로 한 구좌를 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거는 조합원들에게 공유해서 제가 공청회를 몇 번 할 것인데 출자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상호관계나 공동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에 이숙치 않은 우리사회에서 특히 개성이 강한 창작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과연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 구성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느슨한 단계, 중간단계의 조합형태로 출발해서 그 하부조직은 아닙니다만 대표들이 운영하는 창작집단에게 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하고 있다고 할까요. 이게 제 의도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창작품을 만들어서 판객하고 즉, 생산자와 소비자가 아주 유기적 관계로 가는 형태가 협동조합의 가장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극단들이 공연을 할 때 사실 유료관객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지원금제도가 빚어낸 잘못된 현상으로 보입니다만 지원금 만큼만 공연하고 마는 수동적인 극단 운영이 실제로 빈번하거든요. 지원금이 없었을 당시, 그러니까 1997년 이전에는 대학로에서 소극장을 대관해서 공연하면서 정말 열심히만 하면 공짜 팝플렛 드리면서 계단에 앉아 볼 정도로 관객 동원에 적극적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신명나게 일했습니다. 관객 유치를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이야 그것을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지만 그 당시는 이런 걸 누가 지원해주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돈도 몇 천만원씩 주죠.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대행을 해주는 회사도 있죠. 그리고 홍보를 길거리에 안해도 되고 온라인 홍보매체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티켓을 구매해서 보는 관객이 없다면 그건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역할과 가능을 구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협동조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창작단체로서의 협동조합 이전에 느슨한 단계, 중간단계의 협동조합을 꿈꾸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한 발제문에 보면 표준정관에 의한

기초정관을 참고하시라고 적어 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권: 발제로 느슨한 네트워크 '행복 충전소'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흥미롭게 들었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것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세 분의 토론자 중에서 송인현 대표님께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

송인현: 우선 김병호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물론 오랫동안 가까이 있으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공감이 가면서도 의심이 가는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생각하는 예술인 협동조합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몇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호 선생님께서 계속 느슨한 협동조합을 이야기하셨는데 의도는 뭔가 단체가 모여지는 단체이니까 극단이나 집단처럼 결속력이 많지 않으니까 느슨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아까 먼저 기초발제에서 말씀하신 하선생님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셨는데 느슨하게 결합되어가지고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하고 의심이 들어서 먼저 질문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협동조합을 바라보는 시점이 예술을 통해서, 연극을 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계속 질문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은 예술해서 먹고산다는 의미보다는 좀 다른 의미에서 접근을 시작해서 생산성에 대한 쪽으로 넘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번째 느슨한 형태의 협동조합의 형태가 그런 형태라면 마치 작은 협회가 아닐까? 협회에서 하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다운기획에서 한 형태를 협동조합으로 끌으셔서 기획자들끼리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여러 단체들의 기획을

맡으면서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구요. 제가 요즘에 베이비드라마, 또는 스몰사이즈 연극이라고 하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36개월 미만 아이들이 보는 연극이라고 할 때 과연 36개월 아이들이 연극을 볼까요? 지금 유럽은 거의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일구어낸 곳이 아까 김병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볼료냐의 극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들여다보면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을 봐야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에 있어요? 탁아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아에 관심이 있어요. 예술과 육아, 또는 탁아가 어떻게 결합되는가? 이 부분을 들여다 보니까 이건 협동조합으로 가능하고 여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들에게 극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연극을 하니까 극장을 달라면 주나요? 우리가 하는 사업이 협동조합으로 연결이 되는 구체적인 제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화돌봄, 요즘에 문화 돌봄이라는 말을 쓰나요? 제가 어디서 본 듯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문화 돌봄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경험을 단계적으로 쌓아가서 자기의 예술세계를 끄집어 나가는 예술협동조합을 만드는 조직이 있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단순하게 협동조합을 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사회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예술을 접목 시켜야 하니까요. 저희가 연극마을에서 아이들과 떡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예술 프로그램하고 연계시키면서 협동조합을 발전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사회에서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는 예술가들이 바른 먹거리 운동을 예술행위와 결합해서 활동하는 조합을 만드는 것이죠. 또는 사회적인 약자층을 모아서 뭔가 만들어내는, 여기 청석에듀씨어터처럼 여러 모델들을 자꾸 만들어서 여러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협동조합을 만든다. 그런



송인현
극단 만들레 대표

생산자협동조합의 형태가 협회나 기획사의 다른 형태가 될 우려가 있으며 생산성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조합의 결속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생활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먹거리, 방과후 교육, 육아 문제를 예술가들의 협업으로부터 풀어내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동조합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털춤을 추고 있지만 선언을 했습니다. 난 인간문화재는 안돼! 난 거기에 관심이 없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관심이 있는 건 전통의 재창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통을 쓰면서 재창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새로운 작업을 하여 재창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의 가치를 공유하는 예술가들이 있다면 그들끼리 조합을 만드는 것 즉,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가꾸는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술은 자체로써 의미가 있다. 난 자체로 의미있는 예술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자체로 의미있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그 자체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면 그것도 한 가능성의 부분이 아닐까요?

장승권: 두 번째 원영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원영오: 앞서 하신 말씀이 공연예술 분야에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연관될 수 있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분야의 경우 동인제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단순비교를 통해 공통점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예술인 커뮤니티 대한 개념은 공연예술계 안에서 창작자들의 동인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요즘은 프로덕션 체제로 많이 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공연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인력 즉, 프로듀서와 작가 한명 정도, 그리고 무대감독 정도면 해결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작자들은 당연히 작품에 필요한 희곡을 뽑아내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고용된 희곡작가를 항상 두고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작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한 명의 책임감 있는 무대감독을 두는 정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이루어지면 다 오픈 런으로 하죠. 그러는 도중에 배우가 바뀌거나 연출이 바뀌는 것도 빈번하고, 그러다보니 공연예술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왔던 공동체적인 작업의 환경, 공동체적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게 오래전에 사라진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모델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수하게 창작자 중심의 협업 과정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형식을 통한 경제적인 대안, 경제적인 자립, 그 두가지가 함께 하는, 물론 어렵겠지만 공연예술분야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운영과 투명한 재정운영이라는 기본원칙은 협동조합과 동인제 시스템이 추구하는 공통점일 수 있지만 이미 공연예술계의 제작 생태계가 기형적으로 변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연예술분야 역시 이미 시장경제원리로 중심축이 이동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미학적 신념의 유지와 이를 위한 창작여건 발전을 위해 어떤 대안적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즉 유통을 위한 협력시스템 개선 정도로는 멀지 않은 시간에

유사한 협동조합 간에 과다한 경쟁이 예상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역시 시장의 흐름과 요구에 이끌려 협동조합이 왜곡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예술분야 협동조합의 경우도 창작중심의 협동조합과 유통중심의 협동조합,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 그리고 이를 매개 할 수 있는 제3의 형태 등 광범위한 모델들이 개발 될 수 있는 시도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승권: 이어서 오정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오정석: 예술무대 산은 13년이 되었는데 시작부터 창작진하고 기획파트가 구분되어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공연예술단체니까 창작의욕을, 불편함 없이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첫번째구요. 두번째는 전 구성원이 직업인으로서 최소한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술무대 산은 지속가능한 창작단체라는 설립목적을 유지하면서 창작활동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이번 집담회의 주요 의제는 지속 가능한 창작단체의 조직형태가 무엇이며 그 중 협동조합이 다양한 조직형태와 다른 것은 무엇이고 그를 통해 예술단체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을가 하는 것입니다.

김병호 선생님의 말씀은 예술 협동조합이 실현가능하고, 예술협동조합의 사업방향은 가족관객을 대상으로 한 공연단체를 규합하여 공연물을 유통시키 이를 수익으로 창출시키며 조합원을 안정화하고 잉여금으로 이삼차 계획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존의 공연대행사와 차별성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조합원의 자격조건이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듀서로 되어있는데 협동조합이 설립목적에 맞게 안정적 수익구조를 창출하여 각 단체에게 돌아간다 하여도 그 수익금이 단체의 구성원 및 안정적 창작활동에 사용되어질지는 모르는 일이고 대표자 혼자의 책임경영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원영오
극단 노뜰 대표

공연예술계에서는 이미 동인제시스템에서 프로덕션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창작자에게 필요한 조합의 형태는 창작자 제작 중심의 협업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경제적 자립형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에 대한 고민보다는 원형적 추진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충전소는 구성원들의 최소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강제하고 있는데 단체의 구성원들을 보호할 장치들과 공연단체의 고유성을 지킬 장치들이 있는지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공연예술단체는 지속 가능한 수익금을 확보하기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로 인해 주로 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습니다. 행복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초기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사업비 마련과 높은 출자비용, 그리고 회비를 예상할 수 있는데 과연 감내할 공연단체가 현실적으로 있을지 의문입니다.

장승권: 세분 토론에서 구체적인 질문도 있으셨고 대안도 있으셨는데 질문에 대해 김병호 선생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호: 송인현 선생님이 느슨한 협동조합이라는 게 협회와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구상한 게, 창작집단은 협동조합의 원형을 유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인드를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운영을 위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오정석
예술무대 산 기획실장

협동조합이 설립목적에 맞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각 단체에 돌아간다 하여도 높은 출자비를 감내할 공연단체가 현실적으로 있을지 각 공연단체들의 고유성을 지킬 장치가 있을지 우려 됩니다

그래서 발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극단 즐거운 사람들만을 생각한다면 십년이 걸릴 수도 있겠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슨한 단계로 운영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들, 대표들 중에는 기획자, 극작가, 음악가도 있고 여러 형태의 장르별 분야별 대표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에 관한한 서로의 경험을 가지고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느슨한 단계의 문화예술협동조합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몇가지 제안을 해주신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요즘 마을공동체라던지 예술이 지역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과정 속에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베이스는 내가 예술가이면서 직업인이나 스스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내가 예술가로서, 직업인인 예술가로서 기여하고 있는가? 크게 보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데 그 지원을 받을 만큼 내가 공공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보면 협동조합 과정에서 나를 돌아볼 수 기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사회는 지금 예술이 사회에 기여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행복의 키워드는 본인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렇게 보았을 때 복지도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복지, 그리고 문화복지에서 선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예술이 아닌가를 예술가들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작집단은 원형으로서의 협동조합의 본질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원영오 선생님이 이야기한 유통과 소비자 문제는 결국은 만나져야하는데,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협동조합까지 가려면 예산삭감의 일 순위가 바로 우리 예술인이 될 겁니다. 문화는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전환시켜줄 수 있는 과정과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이태리 극단은 시에서 성당으로 운영되고 있던 공간을 100년 동안 위탁을 받았는데, 운영비는 받지 않습니다. 운영은 스스로 하는 건데 지역에 있는 작은 극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더라구요. 그 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서 공연을 하고 사람들에게 예술교육을 하고,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그 공간을 위탁한 건데 형식은 3년단위로 재계약합니다. 일종의 느슨한 단계를 유통으로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느슨한 게 아니고 제도적 원칙에 입각하되 조합원이 약간 느슨한 단계라고 생각해주시면 어떨까하는 것이죠.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도 생각이 바뀔꺼라는거죠. 예를들면 연희단거리패가 밀양 연극촌으로 자리를 잡아서 하다가 태풍이 와서 전부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걸 복원하려면 몇 억이 드는데 그럼 우린 김해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무슨 소리냐 그동안 밀양을 전국에서 누가 알아줬느냐 밀양연극제는 없어지면 안된다! 라고 하며 새로 극장을 지어주는 예를 보면서, 또 다른 예를 들어 경기도 광주에 파발극회가 지속적으로 해온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개관식 때 지역사회의 관계자들이 와서 이 극장은 개인의 극장이 아니며 경기도 광주를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의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느슨한 협동조합이 긍정적 역할을 해서 창작집단 원형의 협동조합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소비자문화협동조합까

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정석실장 같은 경우 예술무대 산은 인형극단으로서 한국에서 그 인식이 저급함에도 불구하고 극에 대한 인식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의지로 지원을 따내고 그 예산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치게 해서 상당히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느슨한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자생력을 갖기 위한 모습이고 방법들인데 창작자나 운영자나 정말로 오픈되어서 일체감을 가지고 운영된다면 순차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동조합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건데 공연대행사하고 차별성이 뭐냐고 한다면 대행사와 극단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계약의 의무를 다하는 정도의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협회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제가 협회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예술단체들의 무책임함을 많이 느꼈어요. 회원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협회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협동조합은 구조가 일대일이고 사람이 중심이고 끝까지 절충해서 의견을 도출해내지 못하면 책임도 지고 집행운영도 직접해야 하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발전단계를 잡은 이유는 당장 운영비를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질문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어쩌면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의 지원제도나 예술단체가 살아가고 있는 시스템은 느슨한 협동조합이 사회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서포트를 하는 단계이구요. 실제로 창작 단체 소속되어 있는 단원들까지 책임지는 단계는 아닌, 그래서 느슨하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대신 이제 각 조합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예술 단체가 자생력을 갖는데도 아주 적극적인 개입, 역할, 역량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이게 또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선은 조합원비를 천만원으로 가니까요. 이렇게 잡아놓은 게 책임감을 가지고 출발하자,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정했을 때 한 발 담둬놓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책임있는 투자를 해서 가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책정한겁니다. 적은 돈이어도 의지를 갖고 갈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승권: 김병호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전히 그림이 잘 안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처럼 문화 예술계를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걸 하시려고 하는 시도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조금 더 분명한 사업구조와 그 사업구조를 구현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져야지 설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협회와 같은 단체들과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협동조합이 뭐냐를 분명하게 생각하여 누가 조합원이 되고 뭘 내고 뭘 만드는지 하는 명확한 동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다음 이야기 까지 간 후에 또 한번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광준 선생님의 기조발제가 있겠습니다.

마을 안에서 가능한 예술협동조합의 상

이광준: 그동안 해왔던 과정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은 협동조합의 어떤 형태가 가능한지 어떤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지 주제들을 좀 끄집어내는 자리라고 이해하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스쿨은 여러 가지 기존의 고민 속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가졌던 고민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포 쪽에서 20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옆에 '성미산 마을'도 있어서 공동

육아에 대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공동육아를 지켜보면서 아빠들이 약간 힘들어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들 교육을 스스로 함께 참여하면서 문화적 경험을 하는 것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기존의 공립, 사립, 영유아원 같은 곳과는 다른 가능성과 시사점을 보았습니다.

홍대는 특이하게 독립문화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으로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해서 독립문화라는 것이 형성되었습니다. 500개 이상의 인디밴드가 있습니다. 그 인디밴드가 언젠가부터 '인디레이블'들을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인디레이블'들이 기존 메이저 음반회사와는 다르게 생산사와 레이블이 결합이 되면서 독립출판처럼 독립유통들을 꿈꾸게 됩니다. 레이블들이 많이 성장하고 인디뮤지션들도 주류가 된 뮤지션들도 있습니다.

그때 인디레이블이 형성되다 보니까 주류화되어서 사업화 되는 '인디레이블'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아닌 레이블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간극이 뭐냐면 조금 더 달콤하고 대중적으로 유통 가능한 음악을 생산하는 레이블들은 생산성이 높아서 주류로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레이블들은 고전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디레이블'이 많다보니까 레이블과 뮤지션에 갈등관계도 생기게 됩니다. 2011년도에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뮤지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그룹이 좀 짠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연봉 천만원이 소원이었다고 해요. 연봉 천만원이 되면 음악을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음악을 접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2007년 이후에 천만원이 넘어서 음악을 계속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산음악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뮤지션 사이에서 이야기가 됐고 탄력을 받게 됩니다.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에너지도 엄청나요. 밴드의 경우 하나만 들어지려면 30시간씩 술을 먹으면서 서로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보면 밴드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걷거나 그렇게 됩니다. 홍대에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정신을 물려받아 이렇게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계기는 2007년에 '홍대문화예술인협동조합'이라는 이름만 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김월식선생님의 '무늬만 커뮤니티'처럼 '무늬만 협동조합'이었습니다. 이때 홍대문화예술가들이 상업적인 부분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지역을 이야기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름을 붙였던 것이 '홍대앞문화예술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때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이야기만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커뮤니티 스쿨을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은 2006년도에 20개월 동안 '홍대 옆 책방'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들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책을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공유소유로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저도 200권정도 책을 엄선해서 갖다놓고 여러 사람도 책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때 월세가 60만원 나갔었는데 10만원씩 나눠서 10명 정도 해서 월세도 내고 유지도 했습니다. 10명이 술자리에서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내서 협동조합형식으로 해보자해서 뭘도 모르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쪽박을 찼습니다. 나머지 16개월 동안 60만원씩 월급을 다 빼려 부어서 하면서 "아, 협동조합은 으쌰으쌰하자고 해서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경험을 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추진하려고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서 2010년도에 제가 기관에서 일하던 5년간에 경험을 정리하면서 문화예술의 제도화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홍대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선생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협동조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쭈어봤습니다. 3-4시간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협동조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예술 기획자니까 뭘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해주셨습니다. 기존의 협동조합에 의한 제



이광준
바람부는 연구소 대표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첫번째 이유는 소액의 출자금을 모아 새로운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시장의 경로가 아닌 다른 유통방식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도에서 하는 게 아닌 협동의 원리나 정신이 더 깊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주셨고 그걸 깊이 새겨서 시작한 것이 커뮤니티 스쿨이었습니다.

처음 고민은 문화적인 측면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문화협동조합이나 예술협동조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동조합을 만들어볼까 고민하다가 홍대에서 20대, 30대 중심으로 한 그룹 소문화를 한 6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학습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20대나 30대가 자기 스스로 뭘가를 학습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학 박사과정을 가거나 아니면 사교육 시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술 커뮤니티문화 자체가 정체되어있는 부분이 학습구조의 괴리에 의해서 온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뭘가 새로운 교육문화, 학습문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일단 단체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체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힘들겠다고 싶었습니다. 단체는 철저하게 회의문화와 협상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가치나 새로운 의미

를 창출하는 것을 너무 빨리 결정하고 너무 빨리 결론을 지으려하기 때문에 단체중심으로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두가지 고민에서 단체 중심이 아닌 개별자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홍대 쪽은 돈이 없어서 힘들 것 같고 사단법인 쪽을 보면 기존에 사단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에 협동조합들을 준비하고서 제안을 드리고 열다섯 분 정도가 모였습니다. 2007년도 7월 24일에 협동조합에 대한 이런 이야기 자리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열다섯 분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첫번째는 열다섯명의 멤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 중에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열다섯 명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4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문제는 쓸림 현상이 생겼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이 생겨서 그쪽으로만 사람들이 다 쏠렸습니다. 이런 쓸림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뭐 그런 실험을 했던 게 그 해 상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된 문제들은 예술가들이 돈을 벌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작가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한 것들을 팔거나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 미디어아티스트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분은 영상에 관련된 강의를 대학에서 하면 얼마를 받고 어디에서는 강의를 하면 얼마를 받는데 여기서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이때 새로 결합했던 멤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과 6개월 동안 작업을 하면서 개인의 욕망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제일 많이 부딪혔던 문제가 여전히 없다는 멤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학습활동조합이

비전이 없다는 것인데요.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는 비효율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기업이나 단체나 재단을 경험해 본 경험자들은 협동조합이 자칫 비효율적이고 낭만적 이상에서 하는 그런 조직으로 비춰질 수도 있구나 하고 2011년 후반에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1년 말에 그동안 계속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한 것인데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2년 동안 실험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경제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가장 비경제적인 요소들에서부터 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이 호혜적 상호학습 과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술협동조합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과 인문학과 생활기술이 연결이 된 협동조합인데 좀 더 홍대의 특성 때문에 문화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각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 시각예술가들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열린 '맛콘서트' 와 같은 것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맛 테스팅을 하는 것이었는데, 된장 네 가지를 놓고 진정한 된장 맛을 보게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어머니들이 된장을 잘 만드신다면 된장 담는 법을 예술가들에게 가르쳐 주고, 즉 생활예술적인 부분들은 주민들이 예술가에게 가르쳐주고 예술가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술적 재주를 가르쳐주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최근에 2012년 1월 달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니까 적극적으로 '비인가대안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명시화하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야 더 소통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안예술코스, 생활기술코스 그런 코스를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4월 중순이 되면 5개 이상의 코스에 15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학습공동체 형태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론을 좀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 스쿨의 기본 철학은 문화적 방식의 교육을 통해서 예술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커뮤니티 스쿨을 통해서 공간의 개념을 개선하고자하는 시도 중입니다. 홍대는 디자인 스튜디오 작업실도 많고 작은 카페들도 많습니다. 지금 15개 공간을 네트워킹 했습니다. 이런 곳들을 커뮤니티 스쿨 공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스쿨의 키워드를 나열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술자율성과 자발성, 참여개념, 문제제기교육, 지역기반, 형태적 지속가능성. 이렇게 하나의 삶의 전환을 기대하는 '비인가대안학교' 개념으로 커뮤니티 스쿨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왜 커뮤니티 스쿨이 지금과 같은 것들을 했는가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보다는 협동조합이 출자개념을 갖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시민단체나 사단법인은 회계개념이라서 만월, 이만월 차이입니다. 협동조합이 출자개념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이 기존의 유통방식과 다른 것들을 창출할 수 있겠다고 봤습니다. 유통이 기대되는 예술이 아닌 방식을 풀어나도록 만드는데 협동조합이 유효한 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술과 삶의 분리를 극복 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방식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예술작품, 삶의 진정성이 반영된 좋은 작품과 삶이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활동조합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양극화에서 시장실패와 국가의 실패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려하는 부분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인데요. 사회적 기업이 자꾸 실패를 하니까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지원 받는 순간 돈을 지원받은 사람과 지원해주는 곳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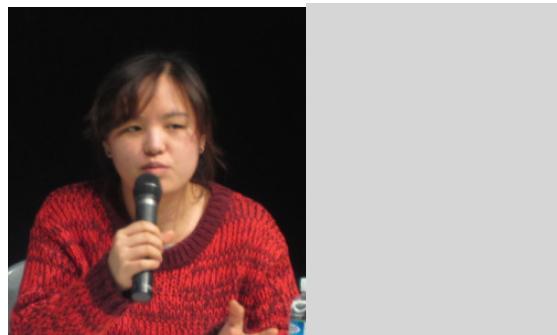
의 모종의 관계가 무의식적으로 생깁니다. 지원금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닌, 협동의 원리를 재구조화하려면 직접 지원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예술의 포화상태라든가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예술이 삶의 기술과 문화와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존재감을 만들 수 있는 것에서 협동조합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커뮤니티 스쿨을 추진 중입니다.

장승권: 지난 수년 간의 경험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송주희 선생님 말씀하시지요.

송주희: 안녕하세요. 이웃문화협동조합 추진위원장 송주희입니다.

커뮤니티 스쿨의 발제문의 첫 문장을 읽고 나서 우리사회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주변사람을 경쟁자로 여기고 상대방을 짓밟고 일어서는 교육방법으로 성장하고 있는 피교육자들에 대해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속한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 토론의 주제로 삼으려고 합니다.

커뮤니티 스쿨은 왜 협동조합이라는 조직구조를 취하려 하는가? 현재 '비인가 대안 문화대학'인 '커뮤니티 스쿨'은 비영리 민간단체(임의단체)와 같은 조직형태를 취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하려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한국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 협동조합이 모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처럼 포장되어 있는 게 분명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확히 협동조합을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 스쿨이 국내 교육의 수많은 문제점 중 자본과의 갈등을 핵심 문제로 삼고 이것을 협동조합으로 풀어내려 한 것이라 봤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이 공동체로 풀



송주희
이웃 협동조합 대표

협동조합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임과 동시에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영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체이기도 합니다

어질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협동조합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커뮤니티 스쿨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협동조합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운동임과 동시에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경영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업체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존스턴 베첼 교수는 협동조합을 사람중심 비즈니스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을 경우에도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조직을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고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를 모집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문제를 협동조합을 전환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듭니다.

장승권: 이어서 이희경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희경: 예술협동조합 집담회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 처음엔 약간 낯설었습니다. 예술? 문탁네트워크가 예술과 관련이 있는 곳인가라는 생각, 또한 협동조합? 음....우리가 협동조합 공부를 하긴 했지만, 아직 협동조합을 만들

계획은 없잖아....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행사명인 예술협동조합 제8의 원칙, 집단적인 회식과 오락이라는 제목을 보고, 음, 가도 되겠군! 이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광준 선생님의 커뮤니티 스쿨에 대한 발제문을 잘 읽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마포지역은 대안적인 인문학 공동체와 다양한 문화생산자 집단 그리고 성미산 마을의 교육、문화、생협 활동의 경험 등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선 반가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발제문만 보아서는 이해하기에 약간 애매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지역사회 문화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커뮤니티 스쿨'의 기본컨셉이 무엇인가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지역사회, 문화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범주가 너무 커서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곳인지 명료하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문화대학인 이유를 학습의 방식을 문화적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문화적 방식이 무엇인지가, 여전히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그 아래 문화교육에 대한 철학을 설명하시면서 지식전달식 강의방식이 아니라 주제를 서로 교감하고, 교류하는 상호작용적 학습방식을 통해 관계적, 집합적 미학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문화적 방식이라는 것은 상호학습의 형태를 의미하는 건지요? 즉 어떤 공리적 목적으로 없는 삶 그 자체를 미학적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하는 곳입니까? 커뮤니티 스쿨도 문탁네트워크와 같은 곳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두번째로는 협동조합인가요? 네트워킹인가요? 제가 보기에 커뮤니티 스쿨의 가장 큰 특징은 마포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기관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아니면 협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네트워킹을 하는 곳인가요? 또한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기도 한데, 커뮤니티 스쿨의 운영모델에서 밝힌

각각의 모듈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인가요? 왜 굳이 협동조합일까요? 문탁네트워크의 사례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적인 인문학 공부를 위해서는 굳이 협동조합이라는 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문탁네트워크 역시 협동조합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런 원리를 공유하고 있지만, 협동조합법에 의거해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런 공동체들이 지역차원의 확장성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공공서비스 기관이 아니니까요.



이희경
문탁네트워크(인문학공동체) 공동 대표

자본주의 시장경제 밖에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을까? 이미 문탁은 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조합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원리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제도가 사고능력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원리를 갖추고 익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과 관련하여 저희 지역에 있는 수월시 평생학습관은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 누구나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색깔이 비교적 분명하고, 시도하기 힘든, 그러나 아주 중요한 활동을 시작한 셈입니다. 다시 문탁네트워크의 경험으로 돌아오자면, 저희가 협동조합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밖에서도 우리가 자

활, 자립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실험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품앗이 생산공동체인 마을작업장, 월든을 만들면서, 우리는 우리가 생산한 화장품, 가방, 수선한 옷, 가구, 반찬 등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단 한명이라도 자립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 협동조합이라는 틀이 필요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커뮤니티 스쿨을 공동체 혹은 공동체들의 느슨한 네트워크가 아닌 협동조합으로 만드시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장승권: 이미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협동조합이 아닌 방식으로 제도로써의 협동조합이 아니고도 협동조합의 가치를 표현 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발표 토론했던 주제하고 유사한 게 여럿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도 있으시고 의견도 있으실 겁니다. 편하게 여기 토론 발표 하셨던 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질문①: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어서 이자리까지 찾아왔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어디서부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지… 실마리는 결국은 출자자를 모아야 한다는 건데 그건 또 다른 대단한 능력인 것 같구요. 제가 만나고 있는 예술가협동조합을 고민하는 작가들은 한달에 오십만원, 백만원 벌이가 안되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고심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들하고 출자금을 만들자는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그들이 생산자가 되고 그들의 상품을 팔아서 그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뭔가를 하는게 협동조합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고민이 아닌가 하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구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에는 사회적 기업 같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슈즈공장 만들어주고 카페만들어 주고 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하는 형태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업인들과의 경

쟁관계를, 사회적인 약자라는 명분을 가지고 탈취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아니지않느냐. 당당하게 경쟁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수익을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회사들처럼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다른 거죠. 하지만 배가 고풀네 이 배고픈 예술가들은 어떻게 살아야하는 건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승권: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김병호 선생님 얘기를 먼저 들어주시는게..

김병호: 장르가 어느 쪽 이신가요? 예술가라고 하셨는데..

자유질문①: 저는 미술쪽입니다.

이광준: 첫 번째 질문이 학습조합의 필요와 협동의 원리가 무엇이냐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협동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문화는 계를 부었다가 계주가 갯돈을 갖고 튀는 절망의 문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개인성, 개별성이 강했던 것 같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생산적 구조를 갖고는 힘들다고 봐서 학습활동조합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와 함께 작업을 하는 이들은 미디어아티스트,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 그래픽디자이너, 환경교육, 독립출판, 홍대에서 15년 동안 살았으나 아직도 무직자인 어떤 기획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30대 중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 볼까 하는 여성들이 3-4명 있습니다. 관심이 많아서 조합을 만들면 참여하겠다는 분이 60분정도 계셨습니다.

문화예술하고 지역에서의 협동조합이 되려면 각 세대마다 상호 작용이 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예술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강사와 문화예술가와 지역주민이 세 축이 어떻게 크로싱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로싱

될 적에 공동체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출자의 조합원만이 학습구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사와는 돈이 오가는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에 조합이 됐을 때에만 참여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서로 배우기는 마을 대학에 만들어놓으니깐 일반적이라고 해서 지금 표현하자면 '서로 배우는 동네대학.' 간명하게 말하자면 '서로 배우는 동네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활동조합을 했을 때 이윤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자금을 늘리면서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네트워크를 한 단체들의 공간은 지역에 있는 공간들이다. 북카페, 공연장, 스튜디오와 같은 공간들입니다. 그런 곳을 교육 장소로 꾸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문학공동체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지문화원 사이'라던가 그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인문학 교육의 장소라면 커뮤니티 스쿨의 프로그램은 30대 철학 강사와 맥주를 마시면서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한다던가하는 방식으로 소프트한 수준에서 인문학을 결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인문학을 접한 주민이 나중에 문지문화원에 간다든가 다중지성아카데미로 간다든가하면서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일상에 기반이 되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주희: 저도 미대나왔습니다. 얼마전에 TV에 나오더라고요 예술가들이 한달에 백만원 못번다구요. 그걸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한말씀 하셨어요. 돈이란 돈은 다 투자해서 배우게 해놨는데 백만원도 못버냐구. 그 순간 죄책감이 들고 예술을 왜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와 함께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분들은 전부 신진예술가들이예요. 이십대 초반에서 중후반... 대학 졸업하고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찾다가 커뮤니티아트를 시작했는데 사실은 4개월째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작업비 100만원과 재료비 150만원이에요. 인건비로 봤을 때는 네 달에 100만원을 벼는 거거든요. 되게 속상했어요. 근데 저는 그것말고도 다른 다양한 일들을 하고 여기와서도 돈 별구 있는 건데 그런 능력이 없는 작가들은 계속 그림만 그리고 돈벌이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는 거죠. 저희는 마을에서 커뮤니티 아트를 하다보면 마을 사람들이 믿고 잘 만들면 사주기도 하고 서로 연계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철저하게 깨쳤어요. 왜냐하면 마을사람들하고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소비자라던가 그 사람들을 교육으로 만나기까지는 끈끈한 연대가 생겨야 해요. 젊은 사람들이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예술가들이 고집도 있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있는 단체,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이걸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보자, 약간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가난함을 소비자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유치해주는 거죠. 홍보 그러니까 기획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구요. 예술가는 자기 예술 작업 잘하면 되고 그걸 연결해주는 사람이 소비자를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출자금이 2만원이예요. 한 구좌가. 물론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은 한 열구좌 이상씩 하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출자를 많이 했다고 달라지는 건 없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쉽게 협동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그걸 좀 더 열어줄 수 있는 게 협동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 단계인데, 사실은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면 저희 동네로 오세요. 수원에. 가입을 하시고 같이하세요. 홍보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같이 협력하자는 게 협동조합인데 자기가 계속 새로 만들려고 해요. 자꾸 나

만의 것 나의 영역. 그러지 말고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유질문①: 문제는 예술가들이 비누만들거나 앞치마 만들면서 먹고 사는게 아니라 그들이 예술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의 작품을 팔아서 먹고 살게 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보면 또 다른 노동에 불과한 거예요.

송주희: 제가 느끼는 예술가들은 상업성이 좀 부족해요. 근데 그걸 개발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협동조합에요. 예를 들어서 앞치마를 만드는 게 아니구요. 그 사람의 작품을 살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그 작업을 같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협동조합 내부에서는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외부사람한테 이거 한번 사봐 라고 추천해주는 것도 많구요. 그러면 예술가들도 새로운 영역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대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이희경: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긴 그 자리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대체 예술, 예술가, 예술작품 이런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선생님의 논제에 대해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예술의 역사나 예술가의 역사가 문외한이긴 하지만 다 그런거잖아요. 살롱이라고 하나? 후원자를 통해 생계를 해결했던 거고 근대에 와서는 예술을 제도화하는 특별한 방식 속에서만 예술작품이 생산되고 유통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많은 예술가들이 저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점점 유통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의 자유가 거의 확보될 수 없는 거고, 저는 예술가의 질문은 예술가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같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예술가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호: 사실은 시각예술은 연극보다는 훨씬 쉬워요.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공연예술은 혼자할 수 없어요. 절대 혼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각예술하고 다른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장승권: 지금 시각예술과 공연예술과 인문학 까지 왔다갔다 하는 데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나 궁금하기도 했는데 질문은 일반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소비자협동조합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원론적인 질문을 하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왜 협동조합을 해야하는가? 그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도 똑같아요. 돈을 내고 유기농 먹거리를 먹든지, 커뮤니티에 기여한다고는 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방식은 얼마든지 있는데, 또 안 만들고도 그 정신만 지키면 되는게 아닌가? 실제로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느님 믿든 안믿든 착하게 사는데 하느님 안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하는 질문하고 같은 성격이예요. 결국 결정은 조합원들이 하는거죠. 그런데 그 조합원들이 어느 한 주동자가 이거 합시다라고 해도 딴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공동체가 성숙해 나가는 것들, 빨리 갔다고 절대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경험을 통해 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분한테는 그저 밥먹는 자리로 끝나는 자리로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많은 걸 보았고 저 또한 열심히 뭔가를 고민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붙임자료

협동조합 설립 실무
(설립 절차와 표준 정관 예시)



협동조합 설립 실무

- 설립절차와 표준정관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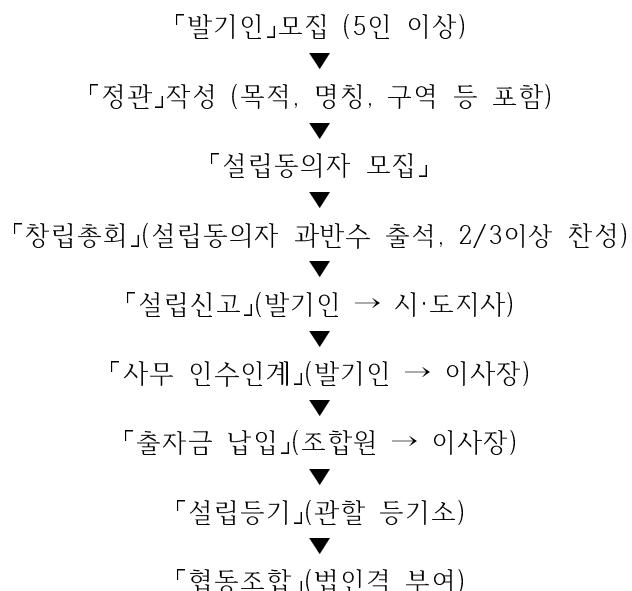
송주희/정리

(이웃협동조합 대표)

[자료]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기"에서 발췌
PDF 파일 다운받을 수 있는 곳 : <http://www.cooperatives.or.kr/> 자료실
[추천 참고자료] 해피 투게더 협동조합 _ 알기 쉬운 협동조합기본법 해설서/ 기획 특임장관실 /
글 이대중

협동조합 설립(신규 설립시)

[표] 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함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여야 한다. “발기인”이란 협동조합에 뜻을 같이하고 설립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발기인”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법인도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법인은 외국인 출자규제 관련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평등주의에 따라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기인 및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정관 작성

1) 의의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말한다. 모든 법인(협동조합 포함)의 설립행위에는 반드시 정관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은 단체의 기본규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체활동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해 모든 단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 정관을 가지고 등기를 통해 공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앞서 모집된 5인 이상의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규칙이 될 “정관”을 함께 작성하고 이를 서면에 기재한 후 각자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한다. 형편에 따라서 설립동의자 모집 이후에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가 모두 참여하여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으나, 이 때에도 발기인만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2) 정관의 주요 내용

정관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인 “필수적 기재사항”과 그렇지 않은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필수적 기재사항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의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14가지 항목(필수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 항목을 작성할 때는 협동조합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각 항목 및 작성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목 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명칭 맨 뒤 뿐만 아니라, 맨 앞에도 사용 가능하다.

예) 000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000 둘 다 가능
-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에서는 타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을 등기하지 못한다.
 - 다만, 이 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부산시에 "대리운전기사협동조합"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부산시에서 동일명칭으로 등기할 수 없으나, 서울 등 타 지역에서는 가능
- 다른 협동조합과 유사하거나 혼동 가능한 명칭 사용시 협동조합기본법 및 타법령*에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 *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농협·수협·신협법 등 개별협동조합법 등
 - 기존 8개 개별 협동조합법에서 고유하게 사용하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예) 00농업협동조합, 00수산업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 '00산림조합', '00중소기업협동조합', '00신용협동조합',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 금지

 -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의 줄임말이 들어간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예) 00농협협동조합, 00수협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협동조합, 00산림조합협동조합, 00중기협협동조합, 00신협협동조합, 00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 금지
- 설립 당시에는 반드시 상설 사무실을 둘 필요는 없으며, 설립동의자의 집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근 직원을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조합 설립의 출자금 최저한도나 1좌의 금액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최대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다.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임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손실금은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 잉여금 배당은 이용실적에 대해서는 전체 배당액의 50/100 이상 배당되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1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회계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적립(법정 적립금)하여야 한다.
-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된다.
- 협동조합은 ①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사업 ②협동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③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2/3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2/3 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이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그 외 정관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떠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으나, 기재 사항의 변경에는 정관변경의 절차가 요구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과 협동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어야 할 부분 이외에 필요이상의 내용을 과다하게 정관에 기재할 필요는 없다.

3) 표준정관례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4가지 조합유형(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을 각각의 “표준정관례”로 정리하여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협동조합 정관례를 참고하여 쉽게 정관을 작성할 수 있다. 물론 협동조합의 목적 및 유형에 따라 표준정관례에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 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복임자료 참고

4) 사업계획 등 작성

발기인들은 정관을 작성할 때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사업계획에는 수치화된 목표, 역할분담, 자금조달, 평가방법 까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창립총회

1)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은 정관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협동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구성원으로 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발기인은 곧 설립동의자로서, 추가적인 설립동의자 모집 없이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설립동의서(예시)

설립동의서
본인은 귀 회가 발기한 ○○시장상인 협동조합(가칭)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여 설립에 참여하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12월 1일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지동 *** (전화번호: 010-*****-1234)
주민등록번호 : 91***** - 1234567
성 명 : ○○○ (서명 또는 인)
○○○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표 귀하

2) 창립총회 개최 공고

창립총회는 일정기간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구독할 수 있는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단, 게시에 의한 공고, 등기우편발송, 전자우편 발송 등 설립동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고에는 ①총회의 일시 및 장소(When/ Where) ②조합원의 자격요건(Who) ③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What)의 내용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립총회 개최공고

○○○협동조합(가칭)의 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설립동의자는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일 시 : 2012년 12월 5일 14:00
2. 장 소 : 서울시 은평구 ○○동 주민센터 회의실
3. 조합원의 자격요건 : 서울시 은평구 ○○시장에 입주하여 점포를 운영하는 자
4. 부의안건
 - 가 . 정관확정
 - 나 .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 다 . 임원선출
 - 라 .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사항

2012년 11월 18일

○○○협동조합(가칭)

발기인 (대표) △ △ △ (인)

3) 총회 개최 전 점검사항

창립총회 개최 전에 발기인은 ①설립동의자 수 ②총회 부의안건 검토 ③총회 개최 공고 ④총회 자료집 인쇄 ⑤창립총회 시나리오 ⑥각종 총회 비품 등의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의 사업 기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정관에는 커피숍협동조합으로 나와 있음에도 사업계획서에는 유기농농산물출하사업을 하겠다는 경우, 정관에는 50여 가지 사업을 망라한 후 사업계획서에는 그 중 2~3가지만 적고 나머지는 추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등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진행

창립총회는 발기인 대표가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게 된다. 다만, 의장은 발기인이 아닌 설립동의자 중 1인을 선출할 수도 있으나, 동 협동조합의 목적·철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발기인이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기인이 임시의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장은 미리 준비한 설립 동의자 명부에 근거해 창립총회에 참석한 설립동의자 수를 확인한 후에 의사록 서명날인인 3명 이상을 선출한다. 선출된 자는 즉석에서 승낙여부를 밝혀 서명날인인을 확정한다. 의장은 미리 정한 의안의 심의 순서를 참석한 설립동의자의 의견을 물어 의사일정을 확정한 후에 순서대로 의안을 심의한다.

의안 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의장이 먼저 의안을 설명하고 의결주문사항을 제시한다. 그리고 의장의 의결주문사항에 대하여 참석한 설립 동의자 중에 동의와 재정이 있으면 의장은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의견이 없으면 동의된 의견으로 확정한다. 만일 의장의 의결 주문 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동의(의견)가 있고 이에 대한 재정이 있으며 다른 의견이 없다면 이것이 유일한 의견으로 확정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동의(의견)와 재정이 있는 의견이 있다면 이들 의견을 의장은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창립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진행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의회식 회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진행 시나리오가 없으면 꼭 필요한 사항을 누락시키고 총회를 종료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5) 창립총회 의결

창립총회에서는 ①정관 ②사업계획 ③임원의 선출 ④수입·지출 예산서 ⑤설립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설립신고

1)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

창립총회를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발기인)는 설립 신고서[서식1]와 함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에 따라 협동조합 신고 업무를 시·군·구로 위임할 수 있다. 시·군·구로 협동조합 신고 업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로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 신고시 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사본) 1부

②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 창립총회의사록은 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특히 의사록서명날인과 선출된 임원의 성명이 각각 기명되어야 하며 지명 또는 선출된 서명

날인인과 임원은 즉석에 수락하였음을 명기해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④ 임원명부 1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cm×세로 4cm)

- 임원명부 및 임원의 이력서를 통해 이사장의 다른 협동조합 이사장 겸직 여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의 감사 겸직여부, 임직원 겸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의 별도 제출은 불필요하다.

⑤ 설립동의자 명부 1부 [서식 19]

⑥ 수입·지출예산서 [서식 4]

⑦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⑨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

2) 자료 보완 요청

신청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신청인은 시·도지 사로부터 자료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다.

3) 설립신고필증 교부

발기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설립신고필증[서식 2]을 교부받는다.

설립등기

1) 사무 인수인계

시·도지사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은 발기인(대표)은 그 사무를 즉시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인계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협동조합의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④ 설립동의자 명부

⑤ 조합설립 관련 각종 서류 등

2) 출자금 납입

이사장은 발기인으로부터 사무를 인수한 날로부터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도 가능하다. 조합원은 정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 총 출자좌수의 30/100이내 범위에서 출자하여야 한다.

출자금은 이사장 계좌로 납입하며, 등기전이라도 납입된 출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증빙서류의 보관이 필요하다.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최초 출자금을 납입할 때 또는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 출자를 확인하는 증서(증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출자금 증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예시)

- 조합의 명칭 - 조합원의 성명(또는 명칭)
- 조합 가입 연월일 - 출자금 납입 연월일
-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 발행 연월일
- 조합 이사장의 기명날인

3)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설립등기하려면 반드시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한다. 설립신고 시에는 의사록 공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창립총회 개최준비 단계부터 의사록 공증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설립등기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이 부여된다.

참고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구성하는 분류번호를 51번으로 부여받게 된다. 설립등기를 하려면 이사장이 신청인이 되어, 설립등기신청서[서식22]에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정관

-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어야 한다.

② 창립총회 의사록

-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어야 한다.

③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 임원 모두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반드시 금융기관이 작성한 증명서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출자금 영수증 등도 이에 해당함.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현물출자재산인께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 ⑥ 설립신고필증
- ⑦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⑧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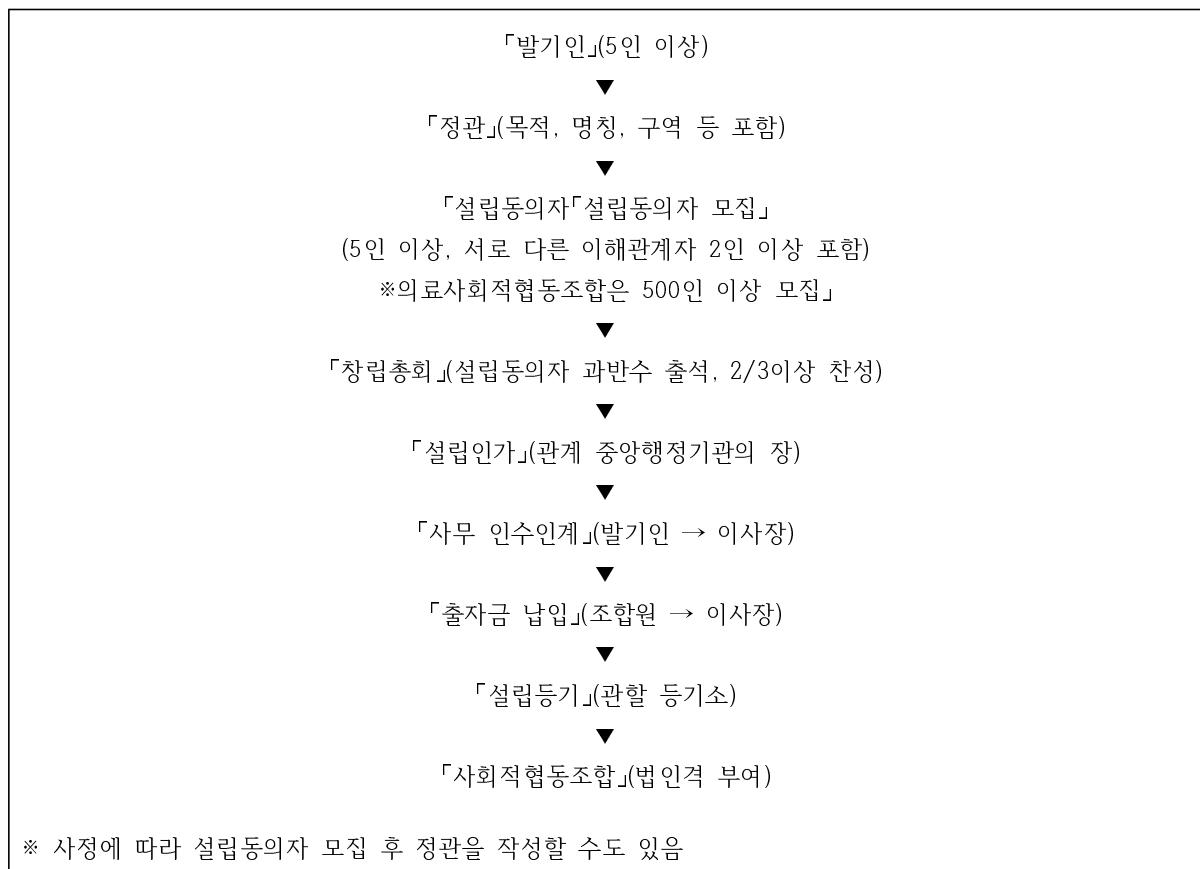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되는 ①목적 ②주사무소 ③목적 ④이사(3명 이상)와 감사(1명 이상)의 성명·주민등록번호 ⑤이사장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⑥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⑦설립신고연월일 등은 등기부에 등기되는 항목이다.

5)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규 설립시)

[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개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발기인 모집부터 정관작성, 창립총회 등 설립까지의 과정은 협동조합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한 부분은 협동조합의 설립 부분을 참고 하도록 하고, 이하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참고] 설립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차이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동의자의 자격	● 조합원	● 조합원 ● 이해관계자 참여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주 사업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가
처리기간	● 30일 이내	● 60일 이내
설립등기 신청	●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이내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

정관 작성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은 협동조합의 그것과 동일하다. 다만 사업, 적립금, 배당, 청산 등의 항목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내용의 차이는 다음과 같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표] 정관의 주요 내용 비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하고는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주사업과 부수사업의 구분 ●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가능
출자금 납입총액	● 관련 규정 없음	●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함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설립동의자

협동조합에서 설립동의자는 조합원 자격 이외에 별도의 요건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설립 및 운영목적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가 참여하는 구조적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이 앞서 발달했던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구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이해관계자 정의

구분	정의	예시
생산자	농수산물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람으로 일종의 사업자	-농업, 어업 등 생산을 하는 경우 -숙박업, 식당,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	-감 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감을 소비하는 경우 -숙박업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
직원	협동조합이 직접 고용한 사람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고용한 의사, 간호사 -협동조합연합회에 상주하는 사무국장
자원봉사자	협동조합에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협동조합에 참여하여 도시락 반찬을 만들거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람 -마을 담당 예쁜 그림 그리기 협동조합에 참가하는 화가
후원자	협동조합에 금전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사람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협동조합에 반찬 재료를 제공하거나 반찬 재료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람 -마을 담당 예쁜 그림 그리기 협동조합에 필요한 페인트를 제공하거나 페인트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사람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의 발기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설립동의자의 모집 없이도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하는 설립동의자의 추가적인 모집이 필요하다.

한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와 달리 보다 강화된 요건인 500인 이상의 설립동의자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설립인가

1) 설립인가 신청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권한은 소관 업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자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된 경우, 주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는 정부조직법, 직제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설립인가 신청시 설립인가 신청서 [서식 8]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사본) 1부

②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 창립총회의사록은 총회명, 소집연월일, 개최연월일, 재적설립동의자, 참석설립동의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특히 의사록서명날인인과 선출된 임원의 성명이 각각 기명되어야 하며 지명 또는 선출된 서명날인인과 임원은 즉석에 수락하였음을 명기해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 1부 (추정재무제표 포함) [서식 12]

- 추정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며, 해당연도(서류접수일기준)와 그 다음연도(해당연도+1)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명부 1부,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cm×세로 4cm)

- 임원명부 및 임원의 이력서를 통해 이사장의 다른 협동조합이사장겸직 여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의 감사 겸직 여부, 임직원겸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의 별도 제출은 불필요하다.

⑤ 설립동의자 명부 1부 [서식 19]

⑥ 수입지출 예산서 [서식 13]

⑦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창립총회 개최공고문

⑨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등으로 주사업 등 설립인가 기준 충족 여부를 충분히 표출하기 어려운 경우나 설립인가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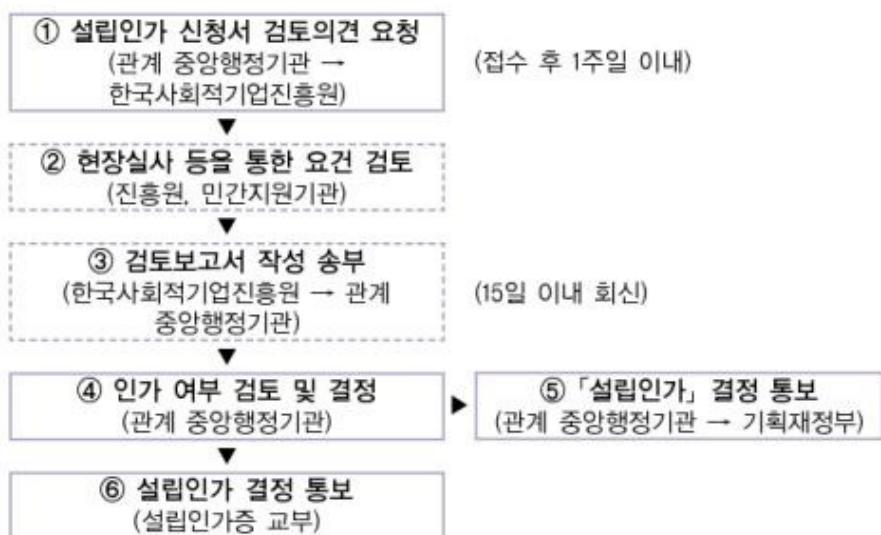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에서 1회 연장 가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설립인가증[서식 9]을 교부 받게 된다. 단 ①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 된 경우 ②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 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③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을 수 없다.

2) 인가 여부 검토 절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서면을 통한 형식적 요건 이외에도 현장방문, 발기인(대표)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절차와 가장 유사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인가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여부 검토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한편 설립인가 여부의 검토 단계에서 기본적인 요건 및 행정절차 및 서류 등 이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추구하는 목적사업으로서의 “주 사업 수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큰 이슈가 된다. ‘주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논의한다.

주 사업 정의 및 판단 기준

1) 주 사업의 정의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특수한 조직으로 다음의 목적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한다.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지역사업형)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배려형)
3.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위탁사업형)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기타 공익증진형)

2) 주 사업의 유형

주 사업은 위 목적사업 중 한 사업을 전체 사업량의 40%이상 영위할 수도 있고, 둘 이상 또는 전부 (혼합형)를 수행할 수도 있다.

(1) 지역사업형

“지역사업형”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업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 사업도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하는 사업이라도 의료사업이 아니면 제외된다.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 전통시장·상가활성화 사업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사업
 - 그 밖에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재생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 지역의 공중접객업소 위생개선 사업
 - 지역의 전염병 또는 질병예방에 관한 사업
 -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 지역주민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사업,
 -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여기서의 지역사회는 사업소 소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 시·도의 관할구역이다. 다만, 실제 생활권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의미한다.

(2) 취약계층배려형

“취약계층배려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을 말한다. 이때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참고] 취약계층의 구체적 판단기준

제1호. 저소득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미만인 가구의 가구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1) *”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 55세 이상인 사람

- 확인방법 :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 장애인등록증,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확인방법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지원대상(고용부 고시 제2012-22호, 12. 2. 1)】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의 범위

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②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로일하기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40세 이상인 사람(만 40세 미만이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100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③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 프로그램)의 1단계와 2단계를 마치고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3단계를 마친 사람

· (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 현 시점에서는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 고용센터는 의뢰 요청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14일 이내 의견 송부

제6호. 북한이탈주민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2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자를 포함한다)인 가족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

-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F-5 또는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 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경우

[참고]사회서비스의 유형

1.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사업
2.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항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예술·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5.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6.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7.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8.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위탁사업형

“위탁사업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사회적협동조합에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사업 유형을 말한다.

(4) 기타 공익증진형

“기타 공익증진형”은 앞의 3가지 이외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유형을 말한다.

(5) 혼합형

“혼합형”은 위 4가지 주 사업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을 일부 또는 전부 수행하는 경우(예: 지역사업+취약계층일자리제공, 위탁사업+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등)를 말한다.

3) 주 사업 판단기준

주사업은 각 유형의 사업 비중이 전체 사업량의 40/100 이상이어야 하며, 이 때의 비중은 연 평균을 의미한다. 다만,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의료사업은 100% 공익적 성격으로 보지만, 보건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이 하는 사업이라도 의료사업이 아니면 제외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요건 특성상 주 사업에 대한 판단은 선(先)인가 후(後) 인가요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사업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판단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협동조합 스스로가 자체적인 “판단기준”을 선택하되, 인가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준을 적시하여야 한다. 이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유형별로 “주 사업의 판단기준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할 활동방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정관 또는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역사업형

인가요건 확인을 위한 사업량은 아래와 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예산이나 서비스 대상, 시간 또

는 횟수로 판단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수입·지출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40%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40% 이상일 것

(2) 취약계층배려형

“취약계층배려형”의 주 사업 판단기준은 주 사업의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일자리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다. 취약계층 피고용자가 신청 기관의 소속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고용 보험 전산망 조회를 통해 판단하며, 취약계층 피고용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의 급여('12년도 4,580원 / '13년도 4,860원(시급기준)를 지급 받아야 한다. 취약계층 피고용자수는 월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 평균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특정월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인정된다.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적용제외는 불요), 임금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로 문의

<일자리 제공의 경우>

- 수입·지출예산서상 전체인건비 총액 중 취약계층인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 일 것.
- 사업계획서상 전체직원 중 취약계층인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일 것.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상 취약계층에게 제공된 사회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사회서비스의 40%이상일 것

[참고] 유급근로자의 의의

● 근로자 개념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됨

● 유급근로자의 인정 범위

-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제외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
- ※ 인정가능범위 : 월 평균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보호사, 장애인근로사업장 소속 근로자(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로 훈련 수당 받는 장애인 제외), 사업주로부터 업무, 복무, 임금 등 직접 지도 감독을 받는 파견형태의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 이 경우 4대 보험 및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적용 제외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근로자 고용으로 인정
- 파견근로자 : 법상 개념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근로형태로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상업무에 대한 제한이 있음)
- ※ 파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근무형태 : 고용과 사용사업주가 일치되어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거나, 위탁(용역, 하도급 등)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 할 수 밖에 없으나, 업무지시 및 복무관리 등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한다면 근로자성 인정

● 요양보호사 ('09. 12. 요양보호사 근로자성 판단지침-근로 기준팀)

- ①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근무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해야하며,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음
 - ②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 ③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인정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경우 위 기준에 해당

● 간병사 (근로기준팀-5557. 2006. 10. 10)

- 간병사연합회 소속 간병인 : ○○간병사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병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간병사를 모집·교육한 후, 동 연합회 소속의 간병사로 등록, 월 40,000원의 회비를 받고 간병사들을 병원에 보내 근무하게 하고 병원으로 부터는 용역금액을 받아 간병사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근로자성 인정
- * 유급근로자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근로개선지도과에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의견에 따라 판단

(3) 위탁사업형

위탁사업형의 경우 인가요건 확인을 위한 사업량은 아래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수입·지출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의 예산일 것

(4) 기타 공익증진형

기타 공익증진형의 경우 주사업의 판단은 지역사업형과 동일하다.

(5) 혼합형

혼합형의 경우 목적사업이 위 4가지 유형의 사업에 해당하는 비율의 합이 40/100 이상인 것으로 사업량을 판단한다.

유형	용어 정의	주 사업 40% 판단기준
① 지역 사업형	(지역사회 공헌) 지역 자원 활용,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사회서비스 제공사업 등	- 사업비 비중 또는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② 취약계층 배려형	● (취약계층)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이하, 고령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경력단절여성, 간호보호 대상자 등 ● (사회서비스) 교육, 보건, 의료, 보육, 예술, 관광, 간병, 문화재 보존, 청소 서비스 등	- 취약계층 제공 사회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 전체 인건비 중 취약계층 인건비 또는 고용 비중(%)
③ 위탁 사업형	● 국가 지자체의 법률에 규정된 행정 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사회적협동조합의 명의로 수행	- 전체 사업비 중 위탁사업비 비중(%)
④ 기타 공익증진형	● 기타 공익증진 사업	- 사업비 비중 또는 서비스 대상 인원, 시간, 횟수(%)
⑤ 혼합형	● 유형①+②+③+④의 혼합	- ①+②+③+④ (%)

[참고] '주 사업'의 주요 내용 요약

설립등기

1) 설립등기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등기가 완료되면 비로소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인격이 부여된다. 다만 일반협동조합은 설립등기 신청 기한의 기준을 '출자금 납입이 끝난 후'로 정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사장은 사무 인수 및 출자금 납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총회 의사록 공증

설립등기하려면 반드시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한다. 설립인가 신청 당시에는 의사록 공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창립총회 개최 준비 단계부터 의사록 공증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의 공증제외대상으로 승인을 받으면, 총회 의사록을 공증 받지 않아도 된다.

[참고] 법인등기 관련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절차(공증인법 제66조의2)

1. 추천 신청 : 공증 면제를 희망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신청서[서식 10]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함
2. 면제 추천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함
※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서류
①관계 중앙행정기관 추천 공문 ②관계 중앙행정기관 검토의견서[서식 11] ③공증면제 추천 신청서 ④설립인가증 사본 ⑤정관 ⑥기타 참고자료
3.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고시함
4. 사회적협동조합은 등기신청시 공증문서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하면 됨

3)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참고]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제출서류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 (법인명의)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4.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 허가(등록)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5.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증사본 1부

전환을 통한 협동조합 설립

(법 부칙 제2조 관련)

동일 법인 간주 요건

협동조합기본법은 부칙 제2조에 동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설될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영위했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간주하는 한시적(2년, 연합회는 1년)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 한시적인 경과규정

법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혼란을 피하거나 원활한 법률적용을 위해 일정기간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동일법인으로 간주되는 요건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내용

☞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

- 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2012. 12. 1.)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일 것
- ②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2012. 12. 1.)부터 2년 이내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
-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최소기준을 갖출 것
- ④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것
- ⑤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칠 것
- ⑥ 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것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①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2012. 12. 1.)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 ②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2012. 12. 1.)부터 2년 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할 것
- ③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출 것
- ④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 ⑤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칠 것
- ⑥ 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 것

이하에서는 동일법인 간주의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본 후, 그와 같은 동일법인 간주의 효과를 받기 위한 절차(이하 '전환절차'라 한다)를 안내한다.

[참고] 용어해설

'동일법인 간주의 효과를 받기 위한 절차'와 '전환절차',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과 '전환 전 기업' 그리고 '설립된 협동조합'과 '전환 후 협동조합'은 각 동일한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부칙 제2조의 효과

1) 효과 일반 : "동일한 법인으로 간주"

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는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A와 B를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는 것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던 A와 B라는 각각의 주체에 대한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A와 B라는 별개의 법적 주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A의 권리·의무가 곧 B의 권리·의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법 부칙 제2조에 의해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과 신설된 협동조합이 동일법인으로 간주되면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권리·의무는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신설된 협동조합의 권리·의무가 된다.

이러한 동일법인 간주의 효과는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직변경"의 법률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상법 제242조, 제604조), "조직변경"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 전환 전·후의 회사는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2) 부칙 제2조의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1)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자격 등의 업력(業歷)의 승계 여부 새로운 협동조합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과 신설된 협동조합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전환 전 기업이 받았던 인·허가, 사회적 기업 인증, 사업실적 등 제반 영업 관련 경력(업력)은 별도로 '이전'되거나 '승계'되지 않고 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원래 갖고 있는 경력(업력)으로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협동조합등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명의표시를 변경해야한다. 그리고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등의 경우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나 지침에서 일정한 조직형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 협동조합 형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이나 지침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을 인·허가, 정책 지원 대상 등의 대상에 포함 시기는 것으로 개정되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떤 법에 의해서 업력이 인정 받았는지(ex. 인·허가를 받았는지, 사업실적을 인정받았는지)에 따라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받은 허가로 표시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기존법인의 사업이 허가(면허)를 요하는 관리사업인 때에 아래 주류면허의 예와 같이 관련 법률이나 지침 등에 '허가(면허)를 받은 자가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신고할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협동조합으로 전환 후 기존 조직의 사업상 업력을 입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법인의 말소등기 내역(개인사업자인 경우 관할 세무서 폐업사실증명원)을 함께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한다(이는 협동조합전환 등기시에 등기일자가 신규 설립일자로 등기되기 때문임). 정리하면 영업 관련 경력(업력)은 별도로 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에게 그대로 인정된다. 다만 협동조합으로 명의표시 변경은 필요하며 기존법인을 규율하던 법률 기타 규정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할 경우 관계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을 규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2)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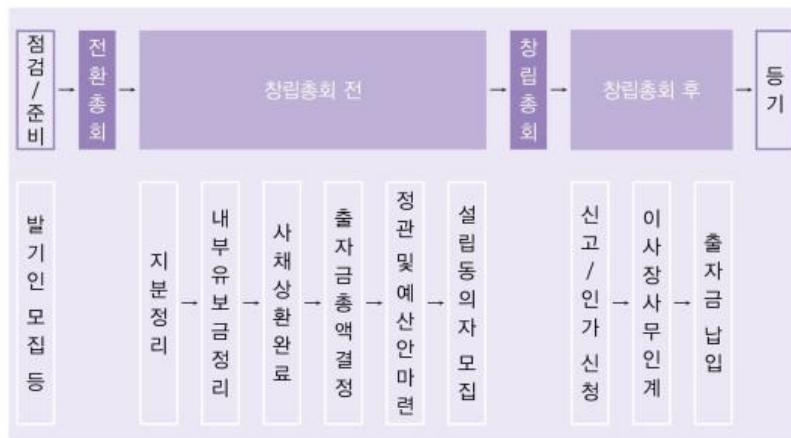
전환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전환 후 협동조합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기존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전환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직원이었던 사람이 출자하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직원의 지위와 조합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즉, 전환 전에 근로자였던자가 전환 후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양 당사자들에 의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적법한 사유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제, 해지가 필요하다.

전환 절차

전환절차란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 부칙 제2조에 따라 전환하는 협동조합과 동일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전환절차의 주요내용은, 먼저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어 전환할 것을 결의하는 전환총회를 거치고,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창립총회를 거친 다음에 신고 내지 인가, 출자금 납입 등의 후속 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음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환총회와 창립총회에서는 각각 보고 내지 의결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총회 전에 여러 가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환의 구체적인 절차는 전환하려는 사업자 또는 법인의 법적형태에 따라 다소 다를 수 밖에 없다. 다음에서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하되, 각

절차에서 사례를 통하여 다른 법적 형태를 가진 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를 설명하도록 한다.

[참고] 전환절차 흐름도



1) 전환총회 전 점검 및 준비사항

(1)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주체 여부

☞ 전환이 가능한 법적형태인가?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제1항은 '사업자 또는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② 법인인 경우

상법상 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회사·합명회사),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 각종 특별법상 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경우 전환이 가능한 법적형태이다. 다만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③ 법인 아닌 법인사업자

기존 조직형태가 법인은 아니나 법인사업자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도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으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참고] 재단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여부

Q1) A재단법인은 사업단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A1)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부칙 제2조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법적 주체로서 '법인 및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역시 '법인'에 속하기는 하나, 그 속성상 사실상 전환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진 구성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 2/3 이상의 결의를 요하는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의 절차를 통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Q2) A재단법인의 사업단은 어떠한가요?

A2) 재단법인의 사업단도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모법인인 재단법인과 마찬가지로 재단법인의 사업단은 전환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진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Q3) A재단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재단법인 및 그 사업단의 경우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해당 협동조합에 재단법인의 재산을 출자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사단법인의 사업단의 협동조합 전환 여부

Q1)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이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아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이 경우 전환을 위한 결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1)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은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환을 의결할 권한은 모법인인 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가집니다. 사업단만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업단이 별도의 법인격을 보유하는 것으로 조직의 분할과 유사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단이 사단법인의 총회와는 별도의 사업단 자체의 운영위원회를 두는 등 사업단을 독립하여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단(또는 사업단의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전환결의를 할 수는 없으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법인인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의결권자로 한 전환결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공익법인의 협동조합 전환

Q) 공익법인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공익성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A) 공익법인은 사회적기업 인증과 같이 기존 법인을 대상으로 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정하게 됩니다. 사업 분야와 목적사업 및 수익의 사용등이 그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익법인을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시 공익법인으로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은 발생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마을기업의 협동조합 전환

Q)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시 이중 지원이 되어서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닌지요?

A) 마을기업은 마을 공동체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주로 개인사업자 분들이 많으십니다.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공식적인 법인격을 얻으시는 것으로서 마을기업과는 별도의 성격을 가진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을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된다 하여도 이중 지원으로 마을기업에서 받으시는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 설립 혹은 사업개시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전에 필요한지 여부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법시행일은 2012년 12월 1일) 이미 설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적어도 법 시행일 이전에 법인 설립 혹은 사업개시를 하였어야 한다. 이때 사업자의 경우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전환이 가능한 시기 여부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부칙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인 2012년 12월 1일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그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서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아 동일법인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누리려면 2014년 11월 30일 이전에(연합회는 2013. 11. 30 이전에) 전환 설립 신고 또는 인가를 마치고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아님에 주의). 따라서 전환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2014년 11월 30일까지(연합회는 2013. 11. 30까지) 전환절차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3)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여부

부칙 제2조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고 보려면, 다음의 두 가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기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가 동일할 것

기존 조직의 사업자등록과 신설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를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②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기존 조직의 사업이 협동조합기본법 제5조(협동조합의 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목적은 신고 내지 인가 신청 시에 입증하여야 하는바, 신청 전에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컨대

사업목적이 명시된 정관, 규약, 운영규칙, 회의록, 주주명부(주주 별 주식수가 비슷할 경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③ 2012년 11월 30일까지 위의 요건(위 (3) ①항 및 ②항)을 충족할 것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당시 (2012. 12. 1.)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각 증명 서류들은 2012년 12월 1일 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회의록을 증명서류로 제출한다면, 2012년 12월 1일 전에 개최된 회의라야 할 것이다.

(4) 설립최소기준을 갖춘 후 전환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부칙 제2조에서는 동일법인 간주를 위한 요건으로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은 전환총회에서 필수적으로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환총회의 필수목적사항 중 보고안건임)이다. 따라서 전환결의를 하기 위한 전환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전환총회에서 설립최소기준을 갖추었음을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참고] 협동조합 유형별 설립최소기준

(일반)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i) 5인 이상의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i) 5인 이상의 발기인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5인의 발기인은 생산자,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중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i)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의 설립최소기준

5인 이상의 발기인, 그런데 이 경우 5인의 발기인은 생산자,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ii) 최저출자금 5만 원 이상을 출자한 설립동의자 500인 이상. 다만 다음 대상자는 최저 출자금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다. (※ 아래 대상자는 5만 원 이상을 내지 않아도 된다.)

①「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③「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④「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iii) 출자금 1억 원 이상 확보

(5) 기타 준비사항

(1)~(4)를 점검하고 준비했다면 이제 전환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런데 전환총회 후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절차들은 가급적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우선 전환총회에서 전환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 - 예컨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세부 유형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은 세부유형에 따라 조합원의 구성과 운영원리가 상이하며, 그에 따라 각각 표준정관도 다르다. 따라서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협동조합의 세부 유형을 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참고]주식회사의 소비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

Q) 주주 10명에 직원 50명을 둔 주식회사가 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주 10명과 직원 50명은 모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A)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뜻에 따라 원하는 유형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소비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 여부는 전환총회에서 주주 10명이 주식의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결정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전환 후 그 조합원 될 자가 가지게 되므로, 전환 전 주식회사의 주주 10명을 포함하여 전환 후 협동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자, 즉 설립에 동의하는 소비자들이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때 창립총회에서의 의결권은 조합원이 되려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의 의결권만 가집니다.

한편 직원 50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협동조합과의 사이에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만약에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출자를 통하여 협동조합의 구성원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비영리사단법인의 일반협동조합으로의 전환

Q) 비영리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일반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만 전환할 수 있으며 일반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을 관장하던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협동조합이 일반 협동조합인지 사회적협동조합인지를 불문하고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기존의 조직형태가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반면,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인 지 사회적협동조합인 지에 무관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전환총회

사업을 하다보면 회사의 구성 및 운영 방식 등 실질에 비추어 보아, 조직형태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실질에 맞는 조직형태, 즉,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기존법인을 해산(해산 결의)하고 다시 설립(설립결의)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상법상 조직변경과 같이 한번의 '조직변경 결의'를 통해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후 조직을 동일한 조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의 전환은 후자의 조직변경 방식으로, 이때 필요한 '조직변경 결의'를 '전환결의'라고 하며, 전환결의를 하기위해 개최하는 총회를 '전환총회'라고 한다. 다시 말해 전환총회란 전환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는 총회이다.

[참고]전환총회 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해당 조직의 정관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법률 또는 정관이 없는 조직의 경우 업무지침에서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 전환총회 소집 결정 및 청구

앞에서 언급한 "전환총회 전 점검 및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하였다면 전환총회를 소집하기 전 단계로 전환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결정 및 청구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전환 전 사업자 또는 법인의 조직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 또는 정관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총회의 소집 여부를 이사회에서 결정해야하므로(상법 제362조) 공고 이전에 이사회를 먼저 개최하여 소집을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감사 또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총 사원 1/5 이상이 전환결의라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경우 등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참고]주식회사에서 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상법 363조4항5호)

전환총회 절차에는 전환 전 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해당 조직의 정관이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법률 또는 정관이 없는 조직의 경우 업무지침에서 이에 상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례]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전환결의의 효

Q) 이사회 결의 등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총회 일에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전환을 결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환결의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사례의 경우 전환결의는 유효하므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이나 정관이 요구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69927 판결 등 참조).

(2) 전환총회의 소집통지 내지 공고

전환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다음 소집절차로 전환총회에 관한 내용을 의결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가. 전환총회 소집통지의 일시 및 방법

전환총회 소집 통지의 구체적인 일시 및 방법은 전환 전 사업자 또는 법인의 조직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총회일 2주 전에 총회의 의결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통지하되, 그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였다면 정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개별적 통지, 신문광고 등으로 사원 전원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통지 절차를 정하는 법률 또는 정관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구성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일간지 게재, 게시에 의한 공고 등)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참고]주식회사의 경우 예외 규정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3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예외적으로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나. 전환총회 소집통지의 내용

전환총회란 전환 전 법인 등 구성원들에게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찬반의사를 묻고 전환을 결의하는 총회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라는 안건을 소집통지 시 총회의 목적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설립최소요건을 구비하였음'을 보고안건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전환하고자하는 협동조합 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1. 의결안건 :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함을 결의
2. 보고안건 :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 이상을 확보했음을 보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1. 의결안건 :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함을 결의
2. 보고안건 :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 이상을 확보하고 이 중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음을 보고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1. 의결안건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함을 결의
2. 보고안건
 - 가.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 이상을 확보하고 이 중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었음을 보고
 - 나. 1인당 최저출자금 5만원 이상을 출자한 설립동의자 500인(발기인 포함) 이상을 확보했음을 보고.
다만 다음 대상자는 최저출자금 한도를 정하지 않음
(※ 아래 대상자는 5만 원 이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③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④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다. 출자금을 1억 원 이상 확보했음을 보고

다. 전환총회 의결권자

전환총회에서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의결권자는 전 법인 등에서 원래 의결권을 행사하던 자로, 전환 전 조직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전환하기 전 조직의 의결권자는 그 조직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조직의정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전환 전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조직형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 따라서 조직형태별 전환총회 의결권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구성원 즉 의결권자 확정의 시기는 전환 전 조직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결정되며, 만약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전환총회가 개최되기 전날까지 구성원명부(ex.회원명부 등)에 등재된 자를 의결권자로 한다.

[표] 전환 전 조직형태 별 전환총회 의결권자

조직형태	구성원 자격	구성원 자격	의결권
법인인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주주	지분에 상당하는(비례하는) 의결권
	유한·합자·합명회사	사원	지분에 상당하는(비례하는) 의결권
	비영리사단법인	회원	1인 1의 결권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단	모법인의 회원	1인 1의 결권
	특별법상 법인	회원	1인 1의 결권
법인이 아닌 법인사업자		등재된 모든 사람	1인 1의 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권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결권
공동운영 개인사업자		동업자	1인 1의 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권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결권

[소집통지서 예시 : 주식회사에서 (일반)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당사의 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일시 : 2000년 0월 0일(0요일) 0시 0분

2. 장소 : 000

3.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협동조합 전환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5인

나. 의결사항

제 1호 의안 : 당사를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전환함

4.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시 : 주총참석장(날인), 신분증

- 대리행사시 : 주총참석장 및 위임장(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5. 기타사항

2000년 0월 0일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인)

* 참고사항 : 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63조에 의하여 각 주주들에게 총회 2주전에 소집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할 시에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제출 받으니 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통지하여 주시고 위 양식을 공증시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사례] 개인사업자가 전환하는 경우 전환총회 의결권

Q)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환총회에서 의결권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특히 자활공동체와 같이 공동운영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A) 개인사업자도 부칙 제2조에 따라 전환을 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공동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실질적으로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만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대표적인 예로 자활공동체) 사업자등록증에 몇 명이 등재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성원 전부가 총회의 의결권자로서 전환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의 수는 1인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되, 의결권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의결권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1인 1의결권이 아닌, 지분 비율로 의결권을 가지기로 한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지분 비율대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공동운영하는 구성원’을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바, 정관 기타 운영 규정에 따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운영협의회, 노사협의회 등과 같이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을 두고 이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온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전환결의 후에 개최될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자는 개인사업자(일반)의 경우와 동일하게 전환 후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 자가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3) 전환총회의 의사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는 동일법인으로 간주되기 위하여 전환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환총회에서는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전환함’에 대하여 종전 구성원, 즉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환을 위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만약 기존 조직의 정관 등에 2/3 보다 강화된 의결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예: 90% 이상 찬성) 기존 조직의 정관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구성원에 대한 의결권 차등 여부 및 차등기준은 기존 조직에 적용되는 법령 및 정관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의결권 행사의 방식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결의도 가능 하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근거가 있거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서면결의가 가능하다.

[사례] 주식회사의 경우 전환결의 성립의 2/3 요건 충족기준 (인원수vs. 주식수)

Q) 주식회사의 주주 9명 중 6명은 전환에 찬성하고 3명은 전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에 찬성하는 6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총주식수의 55%이고, 전환에 반대하는 3명이 보유한 주식수는 총주식수의 45%입니다. 인원수로는 2/3 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식수로는 2/3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결의가 성립하나요?

A) 전환을 위한 결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의 결의 중 의결권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주주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결의는 없다는 점, 지분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의사 결정과정에서는 미미한 권리만을 갖는 극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다수 주주들의 의사결정만으로도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 할 때에, 위 각 요건은 지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주주 전원이 결의에 출석하였다면, 전환에 찬성하는 주주의 수가 주주 전원 수의 2/3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이 전체 지분의 2/3에 미달하는 이상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결의는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례] 전환결의의 적법성 분쟁의 가능성

Q) 주식회사의 주주 9명 중 6명은 전환에 찬성하고 3명은 전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9명 모두 동일한 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환에 반대하는 3명 중 2명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지분을 정리하고 탈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의 반대자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전환을 할 경우 법원에 전환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전환을 강행한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A) 협동조합기본법 부칙에서는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주주 등의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분 2/3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주 1인이 전환에 반대한다고 하여 전환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성원 전원의 동의 없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가능하도록 규정한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조항이 전환에 반대하는 구성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결과 위헌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전환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지침 등을 통하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유한 주식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여 둔다면 협동조합기본법이 위헌에 해당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사례] 조합원수가 많아 총회소집이 어려운 법인의 전환방법

Q) 조합원수가 5,000명이 넘는 의료생협의 경우 현실적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2/3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갈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 외 전환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대의원총회가 구성되어 있더라도 전환결의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총회 소집후 “서면결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구체적으로 서면에 의안을 기재하고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총회의 목적사항을 설명한후 조합원들이 날인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면결의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총회 소집이라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단, 기존 법인의 정관에 서면결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의한 제한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면 무효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서면결의가 가능한 근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서면에 의한 결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준용하고 있는 민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73조). 대법원도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신용협동조합법이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결의사항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미리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에 날인받는 방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른바 서면결의 방식에 의한 이사회결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2554판결).

※ 의결권 위임(대리)에 의한 결의가 가능한지 여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르면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나(2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함(3항), 따라서 대리인에 의한 결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3조 같은 내용임).

(4) 총회의사록 공증

전환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편, 대의원총회 의사록을 공증받을 의무는 없으나, 공증을 받아 둔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의사록 공증시 필요한 서류는 의사록, 진술서, 위임장, 구성원 명부 등으로, 전환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미리 동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5)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① 채권자보호절차의 취지

채권자보호절차는 기존 기업의 채권자에게 전환총회를 통해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전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로, 기존 기업의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취지가 있다.

② 채권자보호절차 효과

구체적으로 채권자에게 전환이 결의되었음을 알리고 전환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이며,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여야 할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후 전환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채권자 보호절차의 세부절차

i) 전환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조직전환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ii)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1개월 이상)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iii) 만약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거나 법원에 공탁(채무에 상당하는 재산을 법원이나 신탁회사에 관리와 처분을 위해 맡기는 것)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 보호절차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

3) 창립총회 전 준비사항

동일법인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는 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5조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

럼 창립총회는 전환을 하기로 결의한 후에 정관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임 등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열리는 총회를 말한다. 따라서 창립총회에서는 전환 후 조합원 자격을 갖게 되는 신설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는 자가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

[사례] 전환총회와 창립총회의 동일(同日) 개최 가능 여부

Q) A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법인의 구성원과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는 자가 거의 동일한데다, 구성원 수가 많아 두 차례에 걸친 총회를 소집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전환하여 동일법인으로 간주되려면 전환총회와 창립총회가 모두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전환총회를 통해 전환결의를 한 후에도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환 총회 후 일정 기간을 두고 창립 총회를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전에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두 총회를 하루에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전환 총회를 먼저 개최, 전환을 위한 의결이 통과된 경우에 한하여, 뒤이어 창립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립총회 공고 시에도 전환총회 전환의결에 대해 가결을 조건부로 하여 진행되는 것임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립총회 전 준비사항을 모두 갖추었다면 하루에 개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및 예산안 승인, 임원 선임 등 협동조합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므로 창립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창립총회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1) 지분의 정리

전환을 희망하는 기존 기업의 조직 형태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지분 정리의 기한은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전'이나, 전환총회를 통해 전환하기로 결의하였다면 미리 지분정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 지분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 비율의 적법성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100 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전환 전 기업의 구성원 1인이 보유한 지분이 30/100이 넘는 경우에는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②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주주 보호 2/3 이상 다수 주주의 의사에 따라 전환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협동조합 전환에 동의하지 않았던 주주는 주식을 양도하거나 회사에 대하여 주식을 매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분의 정리가 이루어진다.

③ 자사주 정리의 필요성

협동조합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的 개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식회사는 자사주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 지분의 정리가 이루어진다.

[사례]사단법인과 지분정리

Q)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지분정리가 필요한가요?

A)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지분 정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지분정리방법

① 다른 주주에게 주식양도계약을 통해 처분하는 방법

②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방법

상법상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상법 제522조의 3)과 같이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기존의 기업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i)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다.

ii) 그 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iii) 회사가 매수한 자사주 정리

이사회 결의로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제342조).

다. 지분 가액의 평가

주식(지분)이 양도될 때 그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① 주주와 회사 간에 가액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액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액으로 결정된다.

i) 상장회사의 경우 ‘전환결의일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2월간, 1월간 및 7일간의 평균가격을 재차 평균한 가액’이나 ‘시가’에 상당하는 가액

ii) 비상장회사의 경우 ‘시가’, 시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시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

※ 한편 세법상으로는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가액을 산정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보충적 평가방법이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가액을 주식가액으로 보는 방법이다. 이 가액을 기준으로 고가 또는 저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비상장주식거래가 일어날 경우 이익의 분여로 보아 증여세, 법인세 등이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참고]지분 가액 평가의 근거

상법 제374조의2에서는 합병 시 반대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i) 반대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고 (ii)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 시 주식의 매수가격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우에 매수가격은 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2월간, 1월간 및 7일간의 평균가격을 재차 평균한 가액으로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 176조의7 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이 결정되는 매수가격에 대하여 회사 또는 주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0. 13.자 결정 2008마264). 따라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균가액에 대한 동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매수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한편 비상장회사의 경우 대법원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결정 2004마1022 등).

[사례]전환 반대자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사례

주식회사의 경우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인데, 본인은 시가 50,000원에 100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자산평가 결과, 현 주식 1주당 가격은 100,000원이라고 합니다. Q1) 주식매수자가 없어서 회사에 대하여 100주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전환반대자는 1주당 얼마의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까?

A1) 현재 주식의 시가로 평가된 100,000원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상법 제374조의2에서는 (i) 반대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고 (ii)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와 회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i)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매수가격은 합병 등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2월간, 1월간 및 7일간의 평균가격을 재차 평균한 가액으로 하며(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 이와

같이 결정되는 매수가격에 대하여 회사 또는 주주가 반대할 경우에는 매수가격의 결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시가를 참조하여 매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10. 13.자 결정 2008마264). 따라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균가액에 대한 동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라 매수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ii)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대법원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매수가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1. 24. 결정 2004마1022 등).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현재 주식의 시가로 평가된 100,000원이 주식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Q2) 주식매매로 인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만약 시가보다 저가로 회사가 매입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만큼 이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 됩니다(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주주에게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이 과세되고(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이 경우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자본감소 절차가 아닐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2호). 같은 해에 다른 주식양도 차익이 없다면 확정 신고 의무는 면제되며(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주식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례]임대차 계약 관계

임의단체로 대안학교를 운영해 오던 학부모 10명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건물 임차료 2억원 중 1억원은 학부모 10명이 1천만원씩 낸 출자금으로 충당했고, 나머지 1억원은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임입니다.

Q1) 이 경우 대안학교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학교 건물 임대차 계약은 이사장 개인 명의로 체결)

A1) 전환의 효과로서 당연히 대안학교가 임차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협동조합이 임차인이 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중 1억원은 이사장으로부터 차용하고 그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1억원을 이사장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현재의 임대차계약을 유지 하되 임대차 보증금 중 1억 원을 협동조합이 이사장에게 대여하여 주고, 그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억원을 양도 받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Q2) 이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A2) 이사장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받는 대가로 임대차 보증금을 대여한다면, 발생 이자만큼의 증여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이라면 자산 수증에 대한 법인세, 비영리법인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례]사단법인 내 사업단이 모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시

사단법인 내 사업단이 모법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사업단의 재무상태를 살펴 보았더니, 부채는 없고 현금만 2억원 있었습니다. 2억원의 처분권은 모법인에게 있지만, 모법인에서는 사업단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법인은 전환 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Q1) 이 경우 모법인과 사업단에서는 각각 2억원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모 법인이 조합원으로 2억원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출자할 경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30/100을 넘을 수 없으므로 협동조합의 자본금과의 관계에서 출자 하여야하고 이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협동조합에 증여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한편 사업단의 회계처리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아래과 같이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회사 : (차변)투자주식 2억 / (대변)현금 2억

사업단 : (차변)현금 2억 / (대변)자본금(출연금) 2억

Q2) 이 경우 세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A2) 자회사가 비영리법인이라면 출연금이 될 것이고 영리법인이라면 자본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세금문제는 없으며, 이후 사업단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2) 내부유보금 정리

기존 조직의 내부 유보금은 기존 조직이 비영리법인인 경우 내부 유보금은 신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전환되고, 기존 조직이 영리법인인 경우 내부 유보금은 구성원 지분에 따라 신규 협동조합의 출자금으로 전환된다. 다만, 구성원이 출자금 대신 적립금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적립금으로 전환된다.

(3) 사채상환 완료

협동조합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환을 하려는 기존의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사채상환을 완료해야 한다. 상법에서도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없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전액 상환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채상환 절차는 창립총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하게 되므로 미리 동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사례]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전 부채 정리

Q)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부채는 유동부채가 20억 원, 비유동 부채가 20억 원으로 총 40억 원입니다. 비유동부채 항목은 사채 5억 원, 장기차입금 4억원, 퇴직급여충당금 2억원, 임대보증금 1억 원, 가맹보증금 8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회사의 유동자산은 현재 15억 원입니다. 동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 전에 부채 40억 원 중 정리해야 할 항목이 있는가요? 정리해야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요?

A) 비유동부채 중 사채 5억 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부칙 제2조에서 부여하는 동일법인 간주의 효과에 따라 주식회사의 채무는 당연히 협동조합의 채무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를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부채는 승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전환 전의 기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협동조합의 부채가 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비유동부채 중 사채 5억 원은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채의 상환은 신고 내지 인가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예산안 승인이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지므로 창립총회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4) 출자금 총액의 결정 및 부족액 납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출자금 총액(1인 당 출자금×출자좌수)은 발기인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한편 출자금 총액은 등기를 통해 외부에 공시된다.

다만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1인당 최저·최고 출자금은 신규 설립 부문 참조), 기존조직의 총 자산 대비 출자금 총액은 50/1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가 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총 자산 대비 출자금 총액의 비율이 50/100 미만 일 수 있다.

(5) 정관안 및 예산안 마련

정관은 협동조합에서의 헌법과도 같다. 따라서 전환 후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가능한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관의 내용이 논의되고 합의될 필요가 있다. 정관안을 마련할 때는 표준정관례

를 참조하면 좋다. (관련 내용은 협동 조합의 설립(신규) 부분 참고)

(6)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동의자는 발기인과 별도로 협동조합의 정관이 규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 즉 조합원이 될 자를 말한다. 설립동의자는 이후 개최될 창립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동의자가 생산자, 이용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최소기준이며, 또한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동의자가 최소 500명이 되어야 한다는 추가 요건도 설립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바, 이를 전환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수의 설립동의자 모집은 전환총회 전에 이루어져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까지도 전환 후 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속 조합원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준조합원/예비조합원 등으로 관리하면서조합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절차는 신규설립의 경우와 동일한바, 아래의 내용 외의 세부적인 절차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신규) 부분을 참고 하면 된다.

(1) 창립총회 소집결정 및 공고

창립총회의 소집은 발기인이 결정하여 공고한다.

가. 창립총회 소집공고의 일시 및 방법

공고는 창립총회 개최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일간지 계재 등 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나. 창립총회 소집통지의 내용

창립총회의 공고문에는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보고 및 의결하여야 할 총회의 목적사항과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의 자격 요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창립총회 필수목적사항

(의결안건)

1. 정관

* 정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정관 이 외 사항은 대의원총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기존 정관에서 상호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외에 사업구역 지정, 1인당 최고출자금 한도, 총 자산 대비 출자금 비율, 소액대출·상호부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3. 수입·지출 예산서

4. 임원의 선출

5.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보고안건)

5. 전환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및 채권 총액

6. 전환에 반대한 기존 조직 구성원의 지분 정리 계획

7. 총 출자금중 30%를 초과한 기존 조직 구성원의 지분 정리 계획

*연합회의 경우 40%

라. 창립총회 의결권자

창립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자는 전환 후 협동조합의 정관이

규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는 자로,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포함

한다. 전환총회의 의결권자와 달리 전환 전의 사업자 또는 법인의

조직형태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마. 대의원 총회에서 안건들을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정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립동의자를 의결권자로 하는 창립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바 대의원 총회에서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설될 협동

조합의 대의원총회에 앞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승인을 의결하고

동시에 대의원 승인도 의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후 대의원총회를 열어 정관

승인을 제외한 창립총회 필수의결사항과 기타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면 된다.

따라서 여기서 대의원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 따른 대의원을

의미하게 되며, 전환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전환총회를 포함하여 총회가

개최되는 순서 및 의결 사항은 전환총회(전환여부 의결) ⇒ 창립총회(정관

승인 및 대의원 승인) ⇒ 대의원총회 (정관외 안건 의결)와 같다.

(2) 창립총회의 의사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설립동의자 수가 매우

많거나, 전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어 참석하여 의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결의권 행사가 가능하다.

[사례] 창립총회 없이 대의원 총회로 전환가능 여부

Q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창립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있나요?

A1) 대의원총회로 대신할 수 없으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전환총회의 의결권자가 기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라고 한다면, 창립총회의 의결권자는 설립동의를 한 조합원 또는 새롭게 조합원이 되려는 자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전환 전 의결권자에 의해 구성된 대의원 총회는 이러한 창립총회의 의결권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대의원총회가 창립총회를 대신할 수 없으며 의료생협의 경우에도 협동조합 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전환하여 동일법인 간주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전환총회와 창립총회가 모두 필요합니다.

Q2) 그렇다면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2) 의료생협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실상 구성원 및 운영방식이 동일하여 전환총회 및 창립총회 전에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할 사항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환총회와 창립총회, 그리고 대의원총회를 하루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전환총회를 먼저 개최하여 전환을 위한 의결이 통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뒤이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립총회에서 신설될 협동조합의 정관을 승인하면서 동시에 전환 전 대의원총회에 대하여 전환 후 협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승인하여야 합니다. 즉 전환총회에서는 전환총회 필수의결사항을 결의하고,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및 대의원에 대해 결의한 후에, 승인된 대의원 총회에서 사업계획, 임원선임 및 해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하면 됩니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환총회와 창립총회시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가능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창립총회 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가능한 사항

(정관에 대의원 총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경우에 한함)

1. 정관의 변경

-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경우 : 상호변경 등 조치 필요
- *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상호변경, 사업구역지정, 1인당 최고출자금 한도, 총자산대비 출자금 비율 등 규정 필요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그 밖에 이사장(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

설립등기하려면 반드시 창립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한다. 설립신고 및 인가 신청 당시에는 의사록 공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정 기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하므로, 창립총회 개최준비 단계부터 의사록 공증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개인별 최소출자규모 유지를 위한 지분 정리

Q1) 주주 5인으로 구성된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5인의 주식수가 다른데(A와 B가 각 25%, C가 20%, D와 E가 각 15%의 비율),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출자비율을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지분 정리를 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반드시 전환 전에 지분 정리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전환 후에 출자금을 반환받는 등의 절차를 통해 출자비율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성원의 희망에 따라 적립금으로 되지 않는 한, 협동조합 전환에 따라 출자금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개인별 최소출자규모를 유지하는 선으로 기업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미리 지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창립총회 의결 후 절차

(1) 전환 설립 신고 및 인가 신청

협동조합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신규설립에 따른 요건 및 절차의 충족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앞서 설명한 부칙 제2조에 따른 전환 요건 및 절차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 ①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것
- ② 기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설립할 협동조합의 업태와 동일할 것
- ③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할 것
- ④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또는 법원에 공탁했는지 여부

[참고] 전환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필요 서류	판단
기존 조직의 구성원 명부	기존 조직의 구성원이 2인 이상인지 여부
기존 조직의 사업자등록증, 설립할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동일한 업태인 지 여부
정관, 규약, 규정, 회의록	기존 조직의 사업목적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또는 이와 유사한 지 여부
재무제표	사채 상환 여부
전환총회소집통지서 내지 공고문	총회소집절차 준수 여부
전환총회 의사록	전환결의 성립 여부
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내지 통지서, 이의 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채권자보호절차 준수 여부
재무제표, 주주명부, 구성원 명부(지분표시)	30/100 이상의 지분권자 존부

참고로 전환에 따른 설립신고 및 인가 시 설립신고필증 및 설립인가증 양식의 주소란 아래에는 “※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조직전환임”이 기재되게 된다.

(2) 이사장 사무인계

발기인은 설립신고 및 인가를 받은 후에는 자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그 사무를 인수하면 납입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3) 출자금 납입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자의 경우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경우와 같이 이미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출자금의 납입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

6)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

전환의 마지막 절차로 설립 등기 및 신규 등기번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창립총회 후 출자금납입까지 마쳤다면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사장은 관할 등기소에 전환 법인에 대한 신규 설립 등기 및 기존 법인에 대한 해산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존 조직이 해산하고 다른 조직형태를 설립하는 보통의 경우 해산등기 외에 청산종결 등기가 필요함에 반해, 부칙 제2조에 따른 전환은 청산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해산등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등기기록이 폐쇄된다.

다음으로 신규 등기번호가 부여받은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

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산약장비', '육아용품'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매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주택임대', '공동육아' 등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다.

<사업자 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업(혹은 ○○지역의 ○○업,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를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을 직원협동조합이라고 함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정관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조합의 직원은 ○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비고) 직원의 조합원 가입은 이 조합에 정규 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습기간이 필요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정관례>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비고)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은 위 5가지 중 2 이상의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다음과 같이 제14조제1항제5호를 추가한다.

5.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비고) 조합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1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비고)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경비가 조합원의 조합 이용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을 규약으로 정하고, 회계연도 중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조정 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할 필요 있음

-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이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정관례>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비고) 대의원은 조합원 유형에 따라 2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명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

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협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 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 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 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비고) 직원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합원의 동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

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 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월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 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위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의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

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

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정관례> 제4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10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비고) 임원의 직책은 조합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0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협동조합 정관례> 제53조 내용 중 제3항을 삭제하고 규정함

(■)제54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2.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4. ○○○ 사업
5. ○○○ 사업

(비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의 사업은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한다.

<예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합회나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5. 소비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공동구매 사업', '돌봄서비스 사업', '임대사업', '사업자문 및 컨설팅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6.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재의 공동구매 사업', '조합원 생산품의 공동판매 사업',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촉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7.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지역클러스터 등 상호 협력하는 회원제 사업' 등을 규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6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조합(「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 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9.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비고) 조합은 조합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명시하여야 한다.

<직원 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56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직원으로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할 수 있다.

1.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

2.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을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고용하는 경우

(비고) 직원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이용은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제59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0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비고) 조합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비고)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제6항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함

제61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 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3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 분이 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4조(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의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고)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비율 이외에 인적배당 등 배당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3조에 따른 보전과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65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5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7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6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자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자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자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② 조합의 청산잔여재산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시.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표준정관례

■는 선택기재 조항, 나머지는 필수기재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한다.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 및 상부상조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회원 등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연합회는 다른 협동조합 및 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연합회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회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회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회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연합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연합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또는 규정) 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자격)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합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합회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④ 연합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회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비고) 연합회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회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고지의무) 회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연합회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원의 책임) 회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회원은 예고하고 연합회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비고)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제13조 제2항의 사유를 정관에 정할 수 있다.

제14조(제명) ① 연합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연합회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연합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연합회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합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고) 연합회의 성질을 고려하여 그 밖에 제명 사유를 추가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회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연합회는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회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 회원의 출자금 환급 청구권) ① 연합회를 탈퇴하거나 연합회로부터 제명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회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연합회는 탈퇴 회원이 연합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연합회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회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회원의 출자금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연합회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회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회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연합회에 납입할 출자금은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연합회 또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연합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회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 날인하여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명칭
2. 회원의 명칭

3. 연합회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⑦ 연합회의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회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 19조(출자금의 취득금지) 연합회는 회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경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회원은 제 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 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회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 제 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연합회는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는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회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 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 제 22조(과태금) ① 연합회는 회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징수할 수 있는 과태금의 명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제 1항에 따른 과태금을 연합회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 23조(총회) ① 연합회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 24조(대의원총회) ① 회원의 수가 200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00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0년으로 한다.

(비고) 대의원의 정수는 50회원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4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회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회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연합회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제 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연합회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 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연합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 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연합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연합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는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 관리, 투표 관리 및 개표 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 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 운동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

제 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연합회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 ② 회장은 제1항 제2호(제47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장이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회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 30조(총회의 소집 절차)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결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49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 31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 대조표, 수지 계산서, 결산 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 보고서의 승인
7.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회원의 제명
9.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회의 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제 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회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위하여 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회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회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회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회원은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또는 출자좌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중에서 선택)에 따라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비고) 연합회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고, 의결권 및 선거권에 차등을 둘 경우 구체적인 차등기준 등을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연합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6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7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사회) ① 연합회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비고) 이사의 종류 및 명칭은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과 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연합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비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에 규정된 필요적 총회의 결 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없다.

(비고) 연합회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합회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5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약으로 정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연합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정수) ① 연합회의 임원으로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회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비고) 임원의 직책은 연합회의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4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연합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 산자
 2. 한정치 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 한다.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비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연합회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연합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연합회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회장이, 회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한다.

제47조(임원의 해임) ① 회원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8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연합회를 대표한다.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회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제50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연합회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연합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

니 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 51조(감사의 대표권) 연합회가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연합회를 대표한다.

제 5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회장은 다른 연합회의 회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연합회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비고)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 총 수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한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연합회인 경우 제 52조 제 3항을 삭제하고 규정할 수 있다.

(■) 제 53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54조(사업의 종류) ① 이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과 직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4. ○○○ 사업
5. ○○○ 사업

(비고) 사업의 종류 중에서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사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밖의 사업은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한다.

<예시>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3.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사업을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문화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통계법」제 22조 제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 55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연합회가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하기 위하여 견본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연합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7.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연합회가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8. 연합회가 법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연합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가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홍보기간'이라 하며, 그 기간은 1년에 3개월을 넘지 못한다) 동안 전년도 총공급고(總供給高)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다만, 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부터 1년(단위매장의 경우에는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홍보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공급고에 대한 제한 없이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0.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이 연합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합회의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비고) 연합회는 연합회의 종류에 따라 해당성이 있는 조항을 선택·명시하여야 한다.

- 제 56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57조(회계연도 등) ① 연합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 ② 연합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 (비고) 각 회계별 사업구분을 정하여 정관에 규정한다.

- (■)제 58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연합회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 제 59조(운영의 공개) ① 회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회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④ 회원과 연합회의 채권자는 회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비고) 연합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등 정당한 사유로 서류의 사본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 ⑤ 회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⑥ 회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또는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회원·회원 조합에 속한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8.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현황

제 60조(법정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비고) 잉여금의 최저비율은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에서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1조(임의적립금)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 62조(손실금의 보전) ① 연합회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 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 63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연합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연합회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 64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100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연합회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65조(결산등) ① 연합회는 정기총회 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6조(합병과 분할) ① 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비고) 연합회가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연합회는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연합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비고) 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동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제 67조(해산)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비고) 필요한 해산사유를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 68조(청산인) ① 연합회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 69조(청산잔여재산의 처리) 연합회가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하나를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예술협동조합 집담회 예술협동조합 제8의 원칙

 '집단적인 회식과 오락'